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 교정 플레이스

### 교정 이모저모 ①

평생의 교정경험, 영원한 교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개최

### 교정 이모저모 ②

국가 간 교정행정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다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

### 교정 이모저모 ③

대구교도소 재소자 2210명 호송 작전  
대구교도소 52년 만에 이전

### 역사와 오늘

수용자에게 선사하는 기능인으로서의 새 삶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정의 공간

성공적 직업훈련의 핵심적 중추 신경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

### 외부 칼럼

일상을 바꾸는 정리의 힘

## 교정 아카이브

### 교정 포커스 금융명

개성소년형무소와 근대 행형

### 교정 논문 윤담

교도관의 교정·교화 개념 인식 분석(하)

### 교정 리포트 허경미

교도관의 적극 교정처우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전문가 칼럼 김도영

사람을 읽어야 범죄 예방이 보인다

### 교정 판례 박경혜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

### 교정 백과 강선경

UN의 최소기준규칙과 미결수 인권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ngsley 판결의 고찰

## 교정 NEWS



# 12

2023 December + Vol. 571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12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월**  
2023년 12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기획·디자인**  
반디컴 Tel. 02-2272-1190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ontents

## 교정 플레이스 Corrections PLACE

**교정 이모저모 ①** 04  
평생의 교정경험, 영원한 교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개최

**교정 이모저모 ②** 08  
국가 간 교정행정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다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

**교정 이모저모 ③** 10  
대구교도소 재소자 2210명 호송 작전  
대구교도소 52년 만에 이전

**역사와 오늘** 12  
수용자에게 선사하는 기능인으로서의 새 삶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의 공간** 18  
성공적 직업훈련의 핵심적 중추 신경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

**외부 칼럼** 22  
일상을 바꾸는 정리의 힘

## 교정 아카이브 Corrections ARCHIVE

**교정 포커스** 24  
개성소년형무소와 근대 행형  
금융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교정 논문** 44  
교도관의 교정·교화 개념 인식 분석(하)  
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팀장

**교정 리포트** 60  
교도관의 적극 교정처우의 한계 및 개선 방향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82  
사람을 읽어야 범죄 예방이 보인다  
김도영 인천구치소 보안과 교사

**교정 판례** 86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  
박경혜 법무부 특별점검팀 교감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정 백과** 114  
UN의 최소기준규칙과 미결수 인권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ngsley 판결의 고찰  
강선경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정 NEWS** 136

**모범 공무원** 145

**독자마당** 146



# 평생의 교정경험, 영원한 교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퇴직 교정공무원 단체로, 1983년 11월 4일 출범했다.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한 퇴직한 교정공무원들이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 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및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2013년 7월 3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이 공포·시행되며 법정 단체로 거듭 성장했다.

정리 편집실 사진 교정동우회



## 교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교정발전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지난 11월 3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역대 회장단, 전직 법무부 교정국장, 교정본부장, 교정공제회 이사장, 율촌 김학성 고문, 박병용 (주)부영주택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과 전국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송영삼 사무총장의 사회로, 먼저 교정동우회 경과보고, 모범지회와 개인 표창이 있었다. 표창을 받은 모범지회는 지난 2년간 전국 지회 활동 사항 평가에서 우수 지회로 선정된 진주지회(지회장 한윤갑), 안양지회(지회장 박상재), 대전지회(지회장 김영복), 광주지회(지회장 배정배)였다. 개인 표창은 조호제 진주 사무국장, 조경중 부산 사무국장, 이종완



이태희 회장 기념사



신용해 교정본부장 축사

대구 사무국장장 사무국 나 과장이 수상했다. 특히, 진주지회는 평소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 등 친목 도모는 물론 농촌일손돕기, 자연보호 활동, 등반대회, 옛 직장 사랑하기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실현과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최우수 지회로 선정되며, 전국 각 지회의 모범사례로 소개되었다. 이어 회장 기념사, 교정본부장 축사, 최근의 교정행정 홍보영상 시청과 교도관의 노래 순서로 진행됐다. 이태희 회장은 “교정동우회가 1983년 11월 4일 창립되어 40주년을 맞이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수상한 지회와 사무국장 모두에게 축하를 드린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전국에서 오신 지회장님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교정동우회가 더욱 발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소 지회장님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교정 선후배가 함께, 교정동우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마무리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축사에서 “오늘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평생을 힘써주신 선배님들을 뵙게 되어 큰 영광이다. 교정동우회가 퇴직 교도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선배님들의 건강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기념식 후 이어진 임원 및 지회장 회의에서는 현안보고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으며 현 회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차기 회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학술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회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 회장 등은 화환을 보내 축하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공익 활동 지원

송영삼 사무총장은 교정동우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퇴직교도관의 신규 회원 가입 확대, 자체 수익사업 등 기금 확보, 교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익활동, 그리고 홍보활동의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창립 제4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전국 36개 지회에서는 교정기관 참관과 선후배 간 간담회, 지역사회 각종 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교정동우회 홈페이지(<http://www.kncova.or.kr/>)를 통해 전국 지회의 다양한 활동사항을 등록, 홍보에도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주최 등산대회·바둑대회 입상 트로피, 우승패



전주지회, 1971년 3월 1일 교우회 첫 모임 당시 회의록

힘을 쏟고 있다.(교정동우회는 본회와 전국 36개 지회에 3,600여 명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퇴직자 등산·바둑대회 출전·입상**

교정동우회는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등산대회와 바둑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도 했다. 매년 과천 서울대공원 산림욕장에서 개최되는 친선 등산대회에서는 특별회(정우회) 소속 7~80대의 고령 회원들이 참가해 우승(2012)과 준우승(2010, 2011)을 차지했다. 한국기원에서 개최되는 친선 바둑대회에서는 단체팀 우승(2018)과 개인전 우승(2023)을 거머쥘다.

전국 각 지회에서는 지회 소속 회원 중 평생의 교정 경험을 살려 인근 교도소·구치소의 수용자 교정위원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수용자 상담과 신앙생활 지도 등 각종 교화활동에 참여하고, 징벌위원회와 귀휴심사 등 분야에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지회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고 학교 보안지킴

이, 문화해설사 등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교정동우회 부산강서지회(지회장 김영귀)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창립 제40주년을 맞아 자체 기념행사 및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전준석 사무국장 부부 등 8명의 회원 가족은 김해 동부노인복지관 급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전국 지회의 활동사항을 분기별로 종합 작성해 '교정동우회보'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등록해 홍보와 함께 회원들의 공유를 도모, 소통하고 있다.

**공식 출범 전 1971년부터 지회 모임 활동 기록**

한편, 교정동우회가 1983년 11월부터 전국 단위 규모로 확대되기 전에도 대도시에 소재한 교도소·구치소에서 퇴직한 교도관들이 모임을 갖고 교우회를 결성, 활동한 기록들이 발견됐다. 전주교도소에서 퇴직한 교도관들이 1971년 3월 1일에 첫 모임을 갖고 회원 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한 것이다. 이 밖에도 1970년대에 10개의 지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이어서 전국 36개 지회 중 80년대에 10개 지회, 90년대 이후 12개 지회, 최근 3개 지회가 구성됐다.



**교정동우회가 퇴직 교정공무원과 함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연혁**

- 1963. 10. 1. 퇴직교정기관장들이 교우회 발족
- 1983. 11. 4. 정부 방침으로 전국 규모의 교정동우회 출범
- 2013. 7.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 시행

**목적**

- 회원들의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교정발전에 기여
-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 함양,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실현
- 회원 상호 간의 유대강화,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등

**조직**

- 임원진: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대의원
- 지회: 36개 지회 (특별회 포함)
- 회원: 정회원 3,600여 명 (명예회원: 현직 교정공무원)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 회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사업
-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 현직 직원과의 유대강화·교정참여
- 수용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사업
-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 수익사업
-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사업
- 지역사회 유대강화 및 봉사활동 사업 등

**가입문의**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34 교정공제회 역삼빌딩 10층
- 문의: 02-521-2026, FAX 02-6952-2023
- 홈페이지: <http://www.kncova.or.kr>
- **전국 지역별 각 지회**
- 퇴직 시 소속 교정기관 총무과(서무담당) 문의

**전국 각 지회 현황**

2023. 12. 기준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서울지역	서울	박수호	안승용
	동부구	백봉기	안외섭
	남부구	진기대	류성현
경기·인천 지역	남부교	이종근	김범남
	안양	박상재	조성주
	인천	김우진	장재학
	수원	유병성	김용철
강원지역	평택	권윤식	구지현
	의정부	조상필	김왕윤
	춘천	채용석	홍병걸
대구·경북 지역	원주	이기남	문정현
	강릉	권혁무	강기원
부산·울산 경남지역	대구	황용철	이종완
	대구구	정화선	이영준
	안동	김수현	김상배
	김천	이근재	김진홍
	경주	이명우	박석준
대전·충청 지역	청송	김형선	이오우
	부산	김운섭	조경종
	부산강서	김영귀	전준석
	창원	김종우	주강돈
전북지역	진주	한윤갑	조호제
	울산	정진훈	공정술
	대전	김영복	최관규
	천안	송창호	양해문
광주·전남, 제주	공주	이원복	오재성
	홍성	이용화	윤태희
	청주	박희명	최락서
서울지역	전주	안태석	김원철
	군산	나종철	김형섭
	광주	배정배	이성재
	목포	조규도	최운기
계	순천	조점기	김은섭
	장흥	신원식	김남경
서울지역	제주	이상실	강근배
	특별회	이국주	송영삼
<b>계</b>	<b>36개 지회</b>		

\* 연락처는 개인정보 관계로 생략했습니다.

국가 간 교정행정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다

#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APCCA)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 Asian and Pacific Conference of Correctional Administrators)가 2023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각국의 교정행정 책임자들로 구성된 국제회의로서, 현재 한국, 호주, 일본, 중국 등 27개국이 회원국이다.

정리 편집실 사진 법무부 교정본부



### 선진 교정행정을 향한 협력의 장, APCCA

지난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 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가 진행됐다. 우리 교정본부는 1983년 뉴질랜드의 제4차 회

의부터 참가하기 시작해, 1986년과 2005년에 서울에서 제7차와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APCCA는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에 공동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홍콩은 회계 관리 및 회원국 통계자료 수집을, 싱가포르는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발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교정본부는 해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계속 회의에 참가하여 의제발표 및 각국 대표단과 의견교환 등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회의는 전체 회의와 소그룹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데, 각국 교정행정의 현안 및 수용관리, 처우, 사회 복지지원,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교정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 교정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APCCA)는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개최가 취소되고 대신 회원들의 연대와 다음 회의 계획 등을 위한 재정위원회와 관리이사회 회의만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41차 APCCA가 개최됐다. 이번 APCCA에는 신용혜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단원들이 참가했다. 회의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재정이사회 및 관리이사회 회

의, 전체 회의와 소그룹 회의, 환영 만찬 등 각국의 교정행정 담당자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개회식에 앞서 11월 12일에는 재정이사회와 관리이사회 회의가 진행됐다. 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APCCA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재정위원회의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관리이사회 회의에서는 개최국인 베트남을 비롯해 12개국이 참가해 APCCA 사무현황과 활동을 보고하고 본회의 토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13일에는 전체 회의와 소그룹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의제는 1)교정분야 현안 및 새로운 도전, 2)정신 건강 문제, 행동장애, 신체장애 또는 약물문제 등을 가진 범죄자 관리, 3)교정시설과 지역사회의 재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재범 감소, 4)직업훈련 및 기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 부문 및 비영리단체와 협력, 5)미래형 교정시스템 개발이었다. 이후 일정으로는 Quang Ninh 교도소와 Thanh Xuan 교도소를 방문해 우리 교정시설과 비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25년 제43차 APCCA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대구교도소 재소자 2210명 호송 작전

## 대구교도소 52년 만에 이전

지난 11월 28일 대구교도소가 52년 만에 신축 교도소로 이전했다. 재소자 2210명의 대규모 호송 작전으로, 상황실에서는 전날 일부 재소자를 먼저 이동시키는 비공식 리허설 단계까지 거치며 철저한 호송준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정리 편집실 사진 법무부 교정본부



###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대구교도소 이전

11월 28일, 이른 아침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교도소 주변이 분망하다. 교도소 밖은 사이드카, 순찰차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하늘은 헬리콥터 소리가 가득하다. 오전 9시, 대구교도소에서 경찰 오토바이를 선두로 재소자들을 태운 버스 6대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한다. 이어 재소자 짐을 실은 이삿짐 차, 무장한 경찰차 등이 뒤따랐다. 이날은 시설이 노후한 대구교도소가 52년 만에 문을 닫고 신축 교도소로 이전하는 날이다. 교정본부는 이번 대구교도소의 52년 만의 이전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며 도주방지 등 보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교정당국은 대형 버스 30여 대를 동원해 재소자 2210명을 대구광역시 하빈면에 위치한 신축 교도소로 이송했다. 수감자 이송 작전에는 경찰기동대 3중대와 특공대 2개 팀, 형사팀, 2개 팀, 교통경찰 60명 등 경찰관 300여 명과 순찰차 12대, 버스 4대가 투입됐다. 버스 안에서 재소자와 동행했던 교도관은 권총과 가스총 등을 휴대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했다. 또한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탈주 등에 대비해 사복을 입고 교도소 이동 경로 곳곳에서 감시했다. 군 당국은 호송 버스가 이동하는 길목 곳곳에 진을 치고 경계 근무에 나섰다. 이날 신축 교도소로의 이전은 오전오후 각각 36대의 버스를 동원해 오후 3시 반쯤 마무리됐다.



전날에는 비공식 호송 작전도 한차례 펼쳤다. 대규모 호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11월 27일 대구교도소에서는 여성 재소자 100여 명을 태운 버스 4대와 이삿짐 차가 빠져나왔다. 마찬가지로 곳곳에 무장한 경찰이 감시했고, 교도관이 동행했다. 대구교도소 측은 “대규모 호송 작전인 만큼 일부 재소자를 먼저 이동시켜 비공식 리허설 단계를 거쳤다”라며 미리 총기와 탄약 등도 보내 각종 사고에 대비했다.

### 신축 교도소 사형장 없애고, 기존 교도소 부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이번 교도소 이전은 화원읍 대구교도소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진행됐다. 법무부는 2020년 1851억 원을 투입해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부지 26만 8000㎡에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6만 1123㎡ 규모로 신축 교도소를 준공했다. 내부에는 청사·수용동·비상대기소(79가구) 등 총 28개 동이 들어섰다. 교정시설과 함께 건립된 체육관과 테니스장·운동장은 주민에게도 개방된다. 특히 신축 교도소에는 기존교도소에 있던 사형장을 없앴다. 이에 사형장이 있는 수감시설은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등이다. 당초 2021년 6월 이감할 계획이었지만 배수 설비 등 공사가 늦어졌다.

수용자들이 떠난 화원읍 기존 교도소 부지는 사용 종료 절차를 거친 후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개방된다. 대구시는 이곳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컴플렉스 등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수용자에게 선사하는 기능인으로서의 새 삶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수용자가 출소 후 새로운 인생을 꾸려 나가려면 안정적인 직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출소 전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충실히 쌓아 기능인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용자 직업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배경이다.



# # 1

## 성공적 사회 복귀의 든든한 구름판

1981년 청송제2보호감호소로 개칭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004년 청송직업훈련교도소로 변모함으로써 직업훈련교도소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2010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바꾼 뒤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정비·미용·제빵·정보기기운용·건축도장·승강기 등 총 18개 공과를 운영하며,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용자를 전문 기능인으로 도약시키는 구름판 역할을 수행한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년에 두 번 직업훈련생 모집 공고를 낸다. 전국의 교정시설은 전문적 직업훈련을 원하는 수용자들의 신청서를 접수한 뒤 모범적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수용자를 선별, 초봄과 여름에 선발 수용자를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시킨다.



이곳에 온 수용자들에게는 직업훈련 과정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해당 기간 안에 필기·실기시험 합격, 자격증 취득 등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바로 원래 있던 교정시설로 복귀하게 된다. 직업훈련의 내실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수용자 처우 등 직업훈련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소한 수용자를 걸러 내기 위함이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직업훈련과 함께 다채로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이력서 작성법, 모의면접 훈련 등을 진행하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의 구슬땀이 실제 직업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 # 2

## 수상과 취업을 이끈 양질의 직업훈련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직업훈련 전문성은 눈에 보이는 성과로 속속 증명되고 있다. 매년 95%를 상회하는 직업훈련생이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300여 명의 직업훈련생 중 95.9%가 자격증을 손에 쥐었다. 아울러 올해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타일 부문 직업훈련생이 금메달과 은메달, 용접 부문 직업훈련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및 지방 기능경기대회에서도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한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실습 경험 및 기술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도작업도 시행 중이다. 소 내에 자리한 '새마을정비직영공장이' 그 무대다. 이곳에서는 직업훈련교사 1명과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보유한 수용자 5명 내외가 일하는데, 신청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오일 교환, 스팀 세차 등의 경정비를 제공한다. 수용자는 차량 실습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직원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정비 받을 수 있으며, 교도소는 교도작업 세입 증대를 이룰 수 있어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양질의 일자리를 출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경북 지역 12개 기업과 취업 업무협약을 체결, 기업에서 특정 기술을 보유한 출소 예정자를 요청할 시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이를 통해 올해에만 9명이 취업에 성공,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당면 과제를 멋지게 해결했다.



# # 3

## 자율과 책임의 미래지향적 공존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기관의 존재 목적에 걸맞게 이곳에 온 수용자들이 직업훈련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수용자 처우 개선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시설은 비봉문화관이다. 수용자 교정교화와 심성 순화를 위해 조성된 비봉문화관의 1층에는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 2010년과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1층에는 문화공연실, 대국실, 노래연습장, 시청각실 등이 두루 마련돼 있다. 그런가 하면 2층에는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헬스장이 마련돼 있어 수용자 신체 단련과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시설도 남다르다. 여러 종교가 한 공간을 번갈아 사용하는 여느 교정시

설과 달리,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실이 각각 따로 마련돼 있는 것. 이렇듯 여러 방면으로 돋보이는 수용자 처우 덕분에 직업훈련의 능률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설명이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내년 1월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처우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 200여 명의 수용자가 2개 수용동에서 자율처우를 누리게 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비봉문화관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물론 자율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르는 법.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직업훈련을 등한시하거나 수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용자를 즉각 원래 교정시설로 복귀시킴으로써 수용자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직업훈련 체계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 성공적 직업훈련의 핵심적 중추 신경



뇌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중추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온몸의 근육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직업훈련과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중추 신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훈련과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야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존재 이유인 직업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 교정시설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 가르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 그 대상이 수용자라면 교육의 강도는 한층 높아진다. 지은 죄를 뛰어넘어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용자 교육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 심성을 순화하고 몰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교정교화와 출소 후 삶의 밑바탕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바로 그것이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이 중 후자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직업훈련과는 이 일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021년 8월부터 직업훈련과를 이끌어 온 이규용 과장이 직업훈련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정북 직원 7명과 저를 포함한 직업훈련교사 15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직업훈련과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용자 직업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직업훈련생 선발, 작업장려금 관리,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용자 운전면허 갱신 등 이곳에 온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수료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사회 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규용 과장은 그간 편안한 부서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써 왔다. 수용자 직업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칫 업무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를 직원 간 화합으로 돌파하기 위해 노력한 것. 덕분에 지금까지 지지 않고 직업훈련에 임할 수 있었다는 게 직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탄탄한 커리큘럼으로 거둔 대체로운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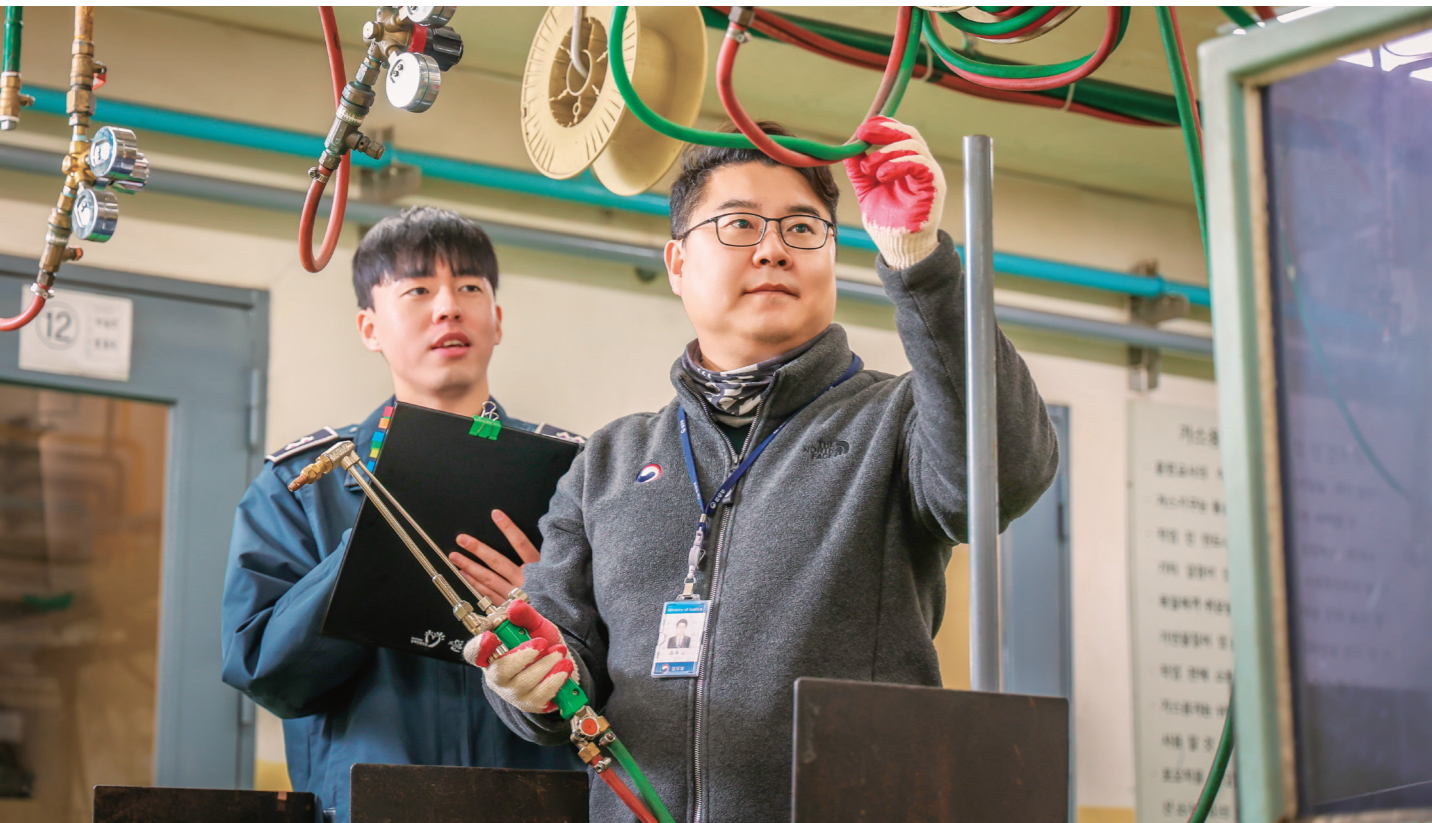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온 수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배움에 대한 의지가 높은데다, 문제를 일으키거나 훈련 성과가 기준 이하로 저조할 때는 곧바로 원래 있던 교정시설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대체로 성실하게 직업훈련에 임한다. 여기에 직업훈련과 직원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교육이 더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괄목할 만한 결실이 지속적으로 맺어지고 있다.

“수용자들이 전문 기능인으로 발돋움하려면 첫 번째

관문인 기능사 자격증을 수월하게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과 직원들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지식과 기술을 쌓는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기능사 정기검정 실기시험에서 응시 인원 132명 중 126명이 합격,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필기시험에서도 응시인원 12명이 전원 합격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실기시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타일 부문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용접 부문에서 장려상이 나온 것이다. 특히 타일 부문 금메달의 경우 60대 수용자가 수상, 나이를 불문하고 ‘하면 된다’는 진리를 타 직업훈련생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준 좋은 선례로 남았다.

**직업훈련 과정에 고도화를 더하다**

타일 부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60대 직업훈련생은 올 10월 충남 보령에서 개최된 제58회 전국기능경기



대회에서도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아무래도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나이가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참가자들에게 조금씩 뒤처졌는데,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회에 집중했고, 입선에 실패했음에도 전국 대회에서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매년 개최되는 교정작품전시회 출품 및 전시도 우리 과의 주요 업무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용자들이 단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전시회마다 최고의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10월에 영남대에서 진행됐는데요. 시민들이 수용자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놀라워하는 모습에 내심 뿌듯했습니다.”

직업훈련과는 새해를 앞두고 한층 고도화된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능사와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을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기사 및 기능장 취득 과정도 운영함으로써 직업훈련생들에게 더 높은 비전을 선보이려 한다. 이와 함께 ‘새마을정비직영공장과 같은 교도작업 프로그램도 꾸준히 확충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실습 경험과 기술 숙련도 향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편안한 분위기가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저는 과장 재임 기간 내내 화합과 편안한 분위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 마음 쓰지 않고 수용자 직업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제시하는 방향을 잘 따라와 주고 좋은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 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정년 퇴임하지만, 앞으로도 직원들이 월간 <교정>이 선물한 티백 세트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2024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과 이규용 과장

# 일상을 바꾸는 정리의 힘

해야 할 일은 많고 머리는 복잡한 연말, 이럴 때일수록 무엇 하나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누구나 종종 겪는 이러한 상황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정리'다.

2023년을 멋지게 마무리 짓기 위해, 지금 당장 정리에 나서 보자.

글 이준섭 문화칼럼니스트

##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어릴 적부터 부모님, 선생님,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정리하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기에, 우리 머릿속에는 '정리= 해야 하는 것'이라는 공식이 깊숙이 박혀 있다. 하지만 정작 '왜 정리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정리는 청소가 아니다. 청소가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라면, 정리는 '흐트러진 것들을 한데 모으고 분류해서 질서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일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나만의 규칙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 정리의 핵심이다.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관련된 정보들을 곧바로 찾아내고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 남들 눈에 책상이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더라도 괜찮다. 그 안에 나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규칙이 존재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정리의 본질을 염두에 두고 업무 공간과 곳곳에 나만의 질서를 확립한다면 한층 집중력 높은 연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 정리 전 고민해야 할 질문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정리에 나서면 자칫 청소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아래의 질문들을 고민해 보자.

### ①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을 정해야 한다. 나의 에너지가 허비되는 지점을 찾아보자. 예컨대 평소 서류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원하는 서류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할 것이다.

### ② 어디까지 정리할 것인가?

정리할 거리를 찾았다면, 어디까지 정리해야 할지를 결정할 차례다. 지금까지 쌓인 모든 서류를 정리할 수는 없으므로 서류의 주제, 기간 등 정리의 세부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 ③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

효과적인 정리 도구를 고르는 과정도 중요하다. 서랍과 캐비닛에 이름표를 붙일 수도 있고, 컴퓨터 폴더를 찾기 쉽게 구성할 수도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리 도구를 고민해 보자.

### ④ 얼마나 자주 정리할 것인가?

정리는 대청소처럼 한꺼번에 처리하기 쉽지 않다. 정리 습관을 들이되, 그 주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정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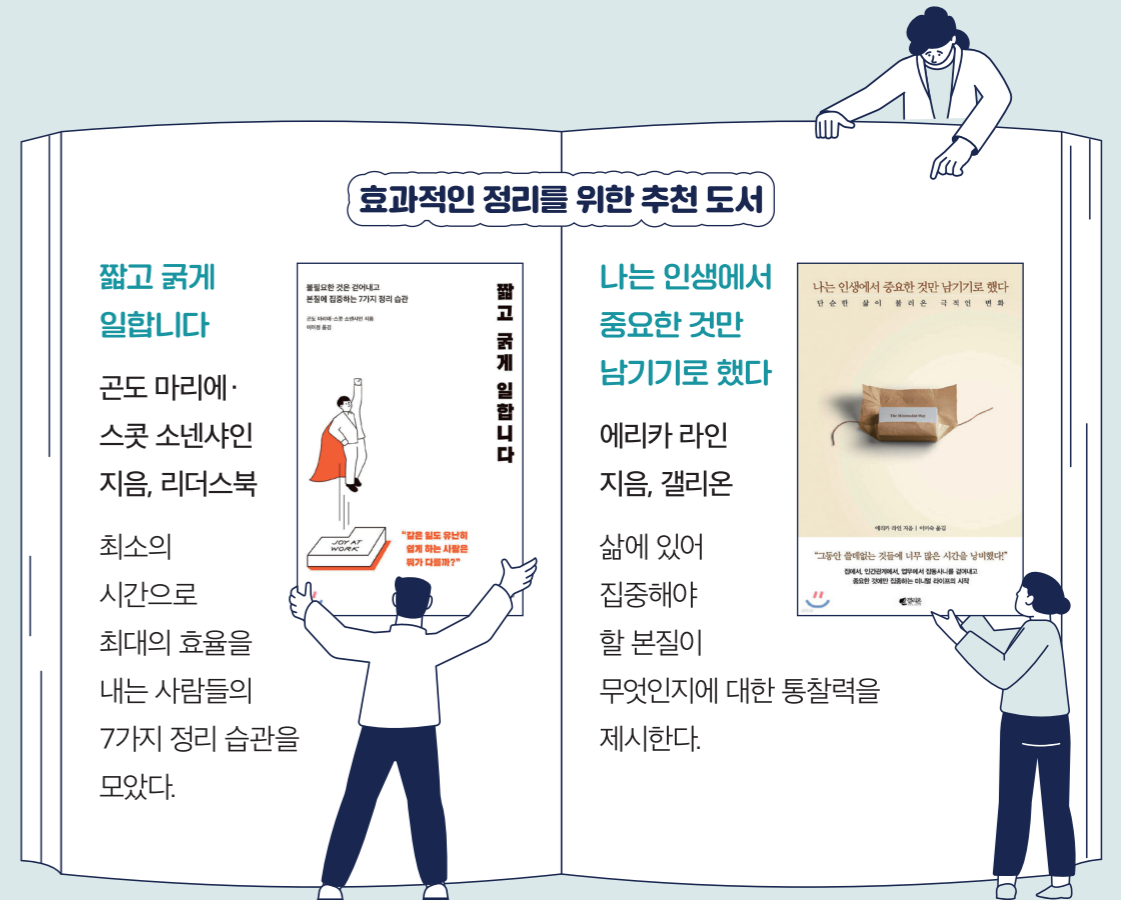
업무 공간에서의 정리는 대부분 '책상 정리'와 '자료 정리'로 나뉜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업무 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 ① 책상 정리: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책상은 업무가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그렇기에 쓸데없는 물건이나 자료가 쌓여 있으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에 몰입하기 쉽지 않다. 미국의 자기계발 전문가 데일 카네기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과 관계없는 모든 서류를 책상에서 치우라'고 강조했다. 자신만의 분류 기준을 만들고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꺼내 쓰는 습관을 들인다면, 자연스럽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② 자료 정리: 습관적으로 분류하라

수많은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분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자료가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관할 자료와 버려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수시로 정리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도구라는 점을 명심하자. 그래야 나의 업무 상황에 맞춘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 개성소년형무소와 근대 행형



김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 I. 서

## II. 연혁

## III. 건축 기타 설비개요

## IV. 직원

## V. 수용자

## VI. 처우

## VII. 교회와 교육

## I. 서

개성소년형무소는 경기도 개성부 원정(元町)에 위치하였으며 개성역에서 동쪽으로 27킬로미터 떨어진 구 고려성의 동문 밖에 있었다. 구 성벽 동쪽은 사적으로 이름이 높은 선죽교(善竹橋)가 있는 상삼정(上三町)이다. 영천(永川) 옆으로 인삼단지와 강병점배(岡兵点配) 사이에 자연의 한마을로 강병(岡兵)에는 소나무 숲과 오래된 밤나무와 숲이 무성하고 새소리가 청초하였다. 시야는 넓어서 일대의 땅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고 경관은 조용하고 깨끗하여 저절로 감화훈육(感化訓育)에 이상향이였다.

1921년 3월 부령 제41호로 경성감옥 개성분감으로 설치되었으며 부지는 주로 당시 법무국 감옥과장 츠키하라 타쿠로(柿原琢郎)가 선정에 관여하였다. 평수 20,009.15평, 가격 10,170엔(円)으로 1921년 11월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22년 9월 청사 총건평 1,242평, 공사비 215,370엔(円)으로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관사 3동 5호, 2동 4호를 준공하여 완성하였다. 앞서 1922년 8월 전옥 補高梨勇司 분감장이 착임하여 창업사무에 임하였고 같은 해 9월 24일 경성감옥 전옥의 주최 하에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1925년도 말에 작업장 5,000평, 취사장 26.5평을 증축하였고, 1927년도 말에는 감방 2동 192평, 공사비 16,028엔(円)으로 증축 준공하였다.

1923년 5월 부령 제11호에 따라 개성소년형무소가 되었으며 이어 1924년 1월 관통첩 제8호로 전국 형무소 및 지소의 형기 1년 이상 18세 미만 남자수형자를 수용하게 되는 동시에 소장이 바뀌어 清原孝太郎 소장이 착임하였다. 扇遇法方은 1923년 2월 소년수형자 선우규정 표준에 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성소년형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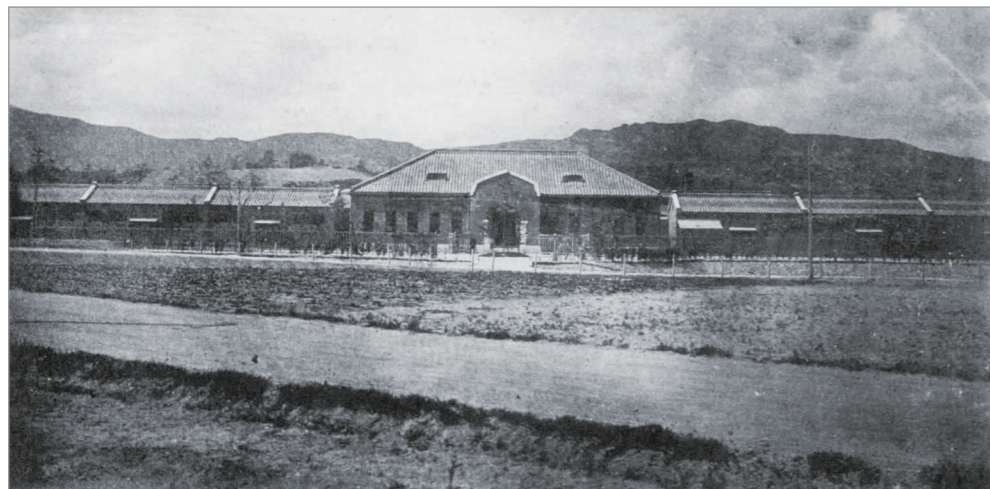
## II. 연혁

### 1. 개청 시

개성소년형무소의 전신은 경성감옥 개성분감으로 1921년 9월 청사 총건평 1,242평, 공사비 21만 5천 원으로 준공하였다. 청사 준공 전 달, 즉 1921년 8월 전옥보 高梨男司가 분감장으로 취임하여 개소 사무를 담당하여 같은 해 9월 24일 개청식을 거행하였다. 1921년 9월 관통첩 86호로 18세 미만 수형자의 집금구역을 개정하였으며, 개성소년형무소에는 서대문, 공주, 대전, 함흥(강릉분감 제외), 평양(금산포분감 제외), 해주, 신의주감옥의 형기(징역, 금고) 6월 이상 및 청진감옥 및 강릉, 금산포 각 분감의 형기(징역, 금고) 1년 이상 18세 미만이 조선인 남자수형자를 집금하게 되어 같은 해 12월 23일부터 수용을 개시하였다.

### 2. 승격 및 명칭변경

1923년 5월 부령 제11호에 의해 승격하여 개성소년형무소로 개칭되었으며 경성감옥의 소관에서 벗어나 같은 달 9월 9일 경성형무소로부터 사무인계를 완료하였다. 1924년 1월 관통첩 제8호로 집금구분을 개정하여 전국 형무소 및 지소에 있거나 또는 새로 입소하는 형기(징역, 금고) 1년 이상 18세 미만의 남자수형자를 집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개성소년형무소 전경

## III. 건축 기타 설비개요

청사준공(1922년 9월)에 이어 같은 해 12월 관사 3동 5호의 준공을 하였으며 이미 속사로 관사부지내에 있는 민간소유 조선가옥 2동 4호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1925년 말에는 작업장 50평, 취사장 16.5평을 증축하였고 동시에 취사장 내 라이스보일러를 설치하였으나 전국 소년범죄의 급증에 동반하여 감방 2동(190평), 작업장 1동(79평), 1932년에 가병사 1동, 같은 연도에 작업장 1동(105평)의 증축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종래 운동장은 공장부지가 되었으며 새롭게 구외 경운지(1496.5평)를 절개하고 매립하여 운동장의 신설과 외벽 확장을 실시하여 다음 해 1933년 8월 공사를 완공하여 종래의 면목을 일신하였다. 또한 영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취사장, 목욕탕 및 구외창고의 증축 2건이 시행되었다. 1933년에 개성부에서 운영하는 수도부지와 함께 구내외 급수전 3개, 소화전 2개소 및 각 관사에 급수전을 설치하였다. 소관 토지의 용법에 따른 현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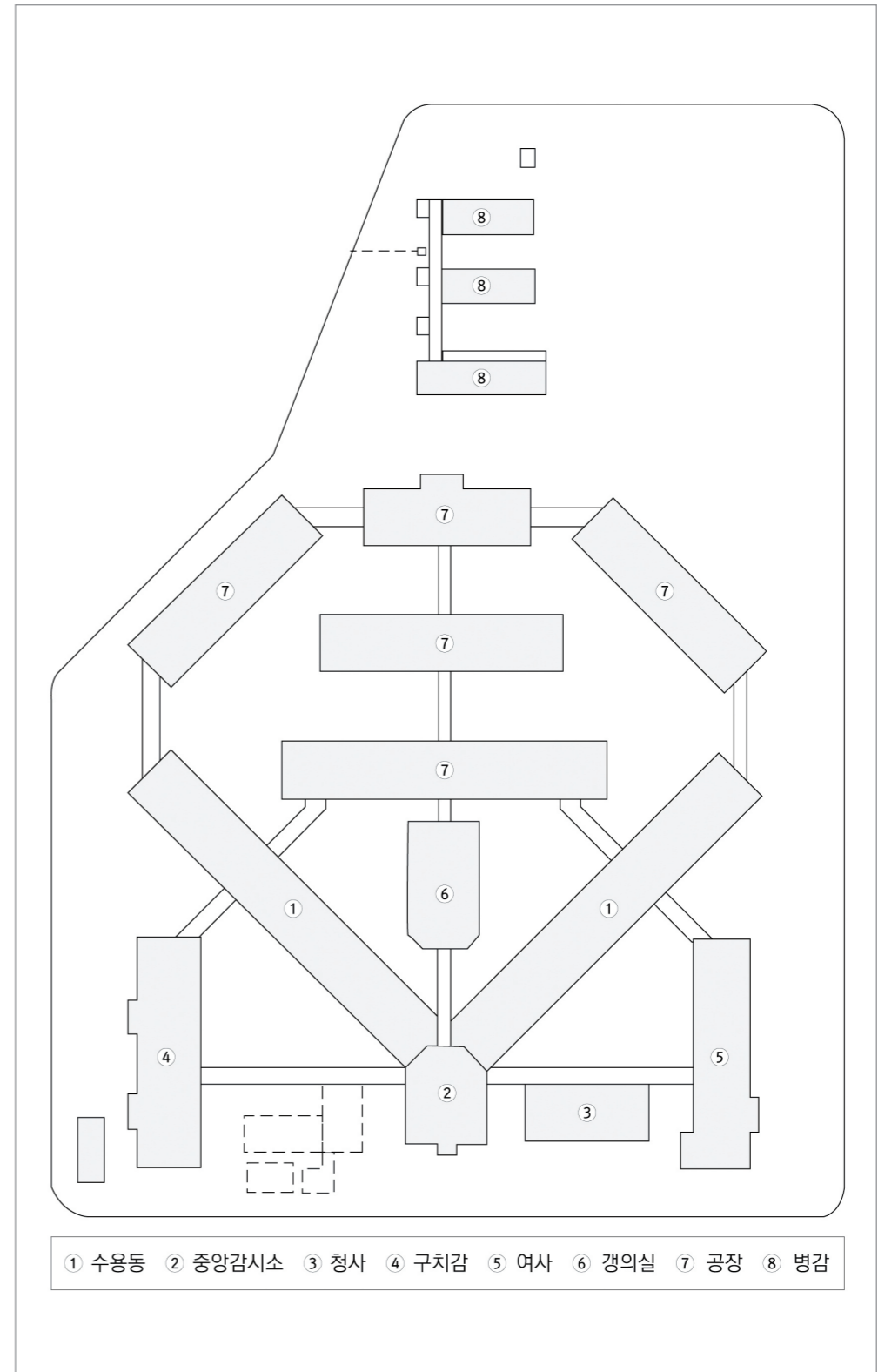
구분	평수
본감 부지	16,010.15평
구내	6,606.50평
구외	9,403.65평
관사 부지	2,027.00평
경운지	1,965.00평
묘지	1,140.00평
계	21,133.15평



청사

주요 건물의 종류 및 용법에 따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건물	용법	현황
청사 및 사무실	벽돌기와 단층	1동
연무장	목조기와 단층	1동
자동차고	목조아연판부착 단층	1동
제품즉매소	목조아연판부착 단층	1동
탕비실	목조아연판부착 단층	1동
농기구 창고	목조기와 단층	1동
감방	목조기와 단층	4동
계호계사무실	벽돌조동근지붕 단층	1동
공장	목조아연판부착 단층	3동
공장	목조슬레이트지붕 단층	1동
취사장 및 목욕탕	목조기와 단층	1동
의무계실	목조기와 단층	1동
병감	목조기와 단층	1동
병감	목조아연판 단층	1동
병감 목욕탕	목조기와 단층	1동
교실 및 탈의장	목조기와 단층	1동
교회당	목조기와 단층	1동
창고	벽돌조기와 단층	2동
소방기구 창고	목조아연판지붕 단층	1동
문위소	목조기와	1개소
주복도	목조아연판지붕 단층	9동
주복도	벽돌조기와지붕 단층	7동
우사	목조아연판지붕 단층	1동
관사(주임관사)	목조기와지붕 단층	1동
관사(판임관사)	목조기와지붕 단층	1동
관사	목조기와지붕 단층	1동
관사(간수관사)	목조기와지붕 단층	1동



개성소년형무소 조감도(1932년)

## IV. 직원

직원 정원은 53명으로 조선인 31명, 일본인 5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수장 이상 간부 직원과 전문직에는 일본인이 배치되었다.

(1934년 6월 1일 현재)

관직별	구분	정원	현원
전옥	일본인	1	1
간수장	일본인	3	3
통역겸 간수장	조선인	1	1
보건기사	일본인	1	1
의무축탁	일본인	1	1
교회사	일본인	1	1
교사	일본인	3	3
작업기수	일본인	2	1
간수	조선인	25	23
	일본인	35	35
작업교수	일본인	2	2
임시작업교수	조선인	-	1
	일본인	-	2
감정	조선인	4	5
		4	7
급사	조선인	1	1
계	조선인	31	33
	일본인	53	56



## V. 수용자

### 1. 입출현황

수용자의 1일 평균 인원은 1924년 251명에서 1933년 80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의 확장을 통해 수용능력을 계속 확장하였다. 1932년에는 주벽을 확장하였고 그 장소에 병감을 이전하였다.

구분	연인원	1일평균 재소인원	입소	출소						연말 재소인원	
				만기	가출옥	은사	타소	집행정지	사망		계
1924	91,689	251	363	157	4		21	1	3	186	354
1925	150,588	412	310	153	9		85	3	2	252	412
1926	164,762	451	402	216	7		125	3	5	356	458
1927	157,368	437	440	293	5	69	74	-	1	442	456
1928	191,878	524	509	263	5		107	1	3	379	575
1929	221,833	608	622	417	6		99	-	1	523	674
1930	276,838	758	605	250	30		186	1	-	467	812
1931	274,358	752	450	388	66		53	3	4	514	748
1932	277,844	758	665	397	60		146	1	5	609	804
1933	294,751	808	630	359	75		180	1	2	613	811



감방



## 2. 죄명별 인원

소년수용자 가운데 절도죄가 약 90%에 가까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가난이라는 사회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1929	1930	1931	1932	1933
방화	2	8	16	11	8
통행방해	9	4	10	16	14
통화위조	-	1	1	1	3
외설간음 및 증혼	4	2	3	2	3
살인	3	3	4	3	6
상해	4	2	2	4	6
절도	608	749	662	725	708
강도	18	19	22	21	33
사기 및 공갈	4	6	6	13	12
치안유지법 위반	1	-	2	1	2
상습특수절도	-	-	-	-	4
기타	12	18	10	7	11
계	674	812	748	804	811

## 3. 형기별 인원

형기별 인원은 1933년 무기수가 1명이 수용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10년 미만의 수용자가 수용되었다. 특히 3년 미만의 수용자가 92-94% 이상을 차지하였다.

구분	1929	1930	1931	1932	1933
무기	-	-	-	-	1
15년 이상	-	-	-	-	-
15년 미만	-	-	-	-	1
10년 미만	16	18	18	13	21
5년 미만	24	25	33	32	35
3년 미만	634	769	697	759	753
계	674	812	748	804	811

※ 이상 유기징역의 평균 형기는 위와 같음. 1929년 1년 7월 29일

## 4. 가출옥자 및 가출옥 취소인원

가출옥은 오늘날 가석방과 같은 제도로 1924년부터 1929년까지는 소규모 인원이 가출옥으로 석방되었으나 1930년부터는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	1일평균 재소인원	가출옥 인원	가출옥인원과 1일평균인원비(%)	가출옥 취소인원	가출옥인원과 취소인원비
1924	251	4	1.8	-	-
1925	412	9	2.2	-	-
1926	451	7	1.5	-	-
1927	437	5	1.0	-	-
1928	524	5	1.0	-	-
1929	608	6	1.0	-	-
1930	758	30	4.0	-	-
1931	751	66	8.7	-	-
1932	758	60	8.0	-	-
1933	808	75	8.3	-	-

## 5. 석방 시 보호

출소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었다. 가족 인수, 보호회 수용, 일시숙박은 물론 정거장에 데리고 가서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교통편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비지급, 송금보호, 의류세탁, 기차할인권 혜택 등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구분	1929	1930	1931	1932	1933
부, 형, 친족 인수	49	25	45	31	29
보호회 수용	26	25	28	20	28
일시숙박	3	1	1	1	4
정거장에 데리고 감	345	229	380	405	373
송금보호	△84	△72	△85	△8	△1
여비지급	△39	△20	△48	△48	△65
의류세탁 또는 신조	△128	△129	△241	△227	△173
기차할인권 혜택	△390	△247	△423	△433	△400

※ △는 동일한 사람에 대한 2종류 이상의 보호를 한 것임

## VI. 처우

### 1. 경비실비

연도별		1929	1930	1931	1932	1933	
1일 평균 수용인원		608명	758명	752명	758명	808명	
세출경상비		210,719.060	213,674.320	195,932.150	211,753.280	228,968.580	
내역	수용비	금액	89,621.000	98,778.120	91,616.390	95,167.220	101,862.600
		1인 평균액	147.400	130.310	121.830	125.550	126.080
	보급사무비 등	금액	121,098.060	114,896.200	104,315.760	116,586.060	127,105.980
		1인 평균액	199.170	151.570	138.710	153.810	157.310



### 2. 분류처우

처우 방법에 있어 개정 당시는 점수제 계급 처우법을 시행하였으나 1923년 2월 소년수형자 처우 규정 표준이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7월 이것의 세칙을 정하고 같은 달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재소자 피복은 1924년 겨울옷부터 그 색을 검은색으로 변경하여 크게 감정의 안정화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처우별 인원을 보면 2급이 가장 많았으며 특별급, 제1급, 제3급 등으로 분류되었고 그 밖에 미지정이 있었다. 처우별 인원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1929	1930	1931	1932	1933
특별급	5 △5	6 △6	6 △6	4 △4	6 △6
제1급	44 △3	111 △20	112 △16	86 △10	94 △9
< 제2급	318	450	382	454	487
< 제3급	64	62	84	99	62
< 제2급	131	112	107	96	83
< 제3급	45	22	36	39	45
미지정	67	49	21	66	29
연말재소인원	674 △8	812 △26	748 △22	804 △14	806 △15

※ △표시는 상을 받은 자를 나타냄. 1933년 말 현재 재소인원의 다른 표와의 불일치는 성년수를 포함함에 의한 것임



자치수용동

### 3. 작업

#### 가. 개요

작업은 1922년 11월 위탁업 양말공을 개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어서 인쇄공, 봉투공, 수부업으로 병공(緋工)을 채용하였다. 양말공, 인쇄공, 봉투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휴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후 토지에 적당한 업종을 설치하는 데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으나 1924년 2월 18세 미만 수형자의 집금제도를 개정하여 실시한 이후 수용자의 증원에 대비하는 것을 주로하여 관사업으로 특히 교양적 업종선택 하에 오직 생활직업을 받는 것에 유의하고 그 발전에 노력한 결과 1933년도의 작업수입액은 약 8만 원에 이르렀다.

1934년 6월 말 현재 업종을 열거하면 관사업에 화양재봉공, 보자공, 인쇄공, 석공, 목공, 혁공, 혁세공, 무력공, 단야공(대장장이), 경사공, 지세공, 조각공, 고공(짚으로 가마니 등을 만드는 공장), 양장공, 축산, 경운 등이 있었다. 위탁공은 화양재봉공 및 목공, 인쇄공, 기직공, 망공, 양장공, 조각공, 단야공, 석세공, 혁공, 지세공, 모자공, 이발부, 인부 등이 있으며 학과교육으로 작업실과 및 체육의 세 가지를 함께 시행하고 계급 처우법에 따른 교양 감화의 실적을 올리는 데 노력하였다.



공장

#### 나. 작업수입

작업수입총액은 1929년 55,049원이었으며 그 후 매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일 평균 취업 인원은 1929년 472명 등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특별작업을 통한 수익이 가장 높았다.

구분	1929	1930	1931	1932	1933
작업수입총액	55,049.750	54,616.320	67,186.070	69,501.380	75,863.050
보통작업	4,947.090	6,291.520	9,214.130	4,516.340	5,896.720
특별작업	50,102.660	48,324.800	57,971.940	64,985.040	69,966.330
양재봉공	30,092.640	21,327.474	29,373.970	26,976.290	33,456.370
인쇄공	11,813.770	15,771.110	16,174.530	24,532.170	12,998.980
지물공	4,844.950	6,872.430	5,637.650	4,811.220	5,752.630
혁공	3,351.300	4,353.786	6,785.790	8,665.360	9,257.740
지세공	-	-	-	-	8,500.610
1일평균취업인원	472명	408명	478명	422명	488명

※ 위 의 제품을 다른 형무소에 보관 전환한 1933년에 2,920원이 있음

#### 다. 작업장려금

재소기간	인원	총액	최다액	최소액	1인당평균액	1인1월당 평균액
1년 미만	3	9.980	4.020	2.890	3.327	0.322
1년	147	572.370	7.100	0.860	3.841	0.320
1년 6월 미만	45	338.840	11.860	1.060	7.530	0.457
1년 6월	137	819.660	9.580	0.480	5.983	0.332
2년 미만	24	231.950	14.550	3.420	9.665	0.434
2년	61	500.220	16.940	1.770	8.200	0.342
3년 미만	11	134.090	19.990	2.990	12.190	0.404
3년	3	51.950	26.860	12.110	17.317	0.481
4년 미만	1	22.230	22.230	22.230	22.230	0.529
계	434	2,681.290	26.860	0.480	6.178	0.357

### 4. 위생

개성소년형무소는 다른 형무소와 비교하여 호흡기계통의 질환이 많았고 특히 늑막염 환자는 나병환자 치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32년 신입자에 대해 결핵피부반응의 조사를 실시한 바 6개월 후에 잠재성 결핵의 보유자는 실로 75%로 다수에 달하였으며 한심하여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소 전의 경우로 인한 체질의 열악과 수용자 격증, 대부분 설비에 3배인 수용 과잉으로부터 오는 많음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1936년 현재 병자수용은 병실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정도였고 따라서 임시로 보통거실을 사용하는 상태였다. 또한 1932년 3월에는 인공태양 등의 설비를 하였으며 1933년부터 치과 치료를 개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 환자현황

구분	1931				1932				1933			
	신환자	전귀		연인원	신환자	전귀		연인원	신환자	전귀		연인원
		완치	사망			완치	사망			완치	사망	
전염성 및 전신병	34	29 △1	1	925	36	27 △4	2	1,205	40	25 △4	3	2,305
신경계 질환	91	81 △4	-	3,005	47	41 △3	-	1,718	15	12 △1	-	1,378
혈행기 질환	10	10	-	275	5	5	-	82	4	2	-	126
호흡기 질환	66	45 △7	2	3,351	89	64 △16	2	5,325	92	47 △20	5	6,333
소화기 질환	12	12	-	320	20	17 △1	-	576	36	33	-	617
비뇨기 질환 생식기 질환	4	3 △1	-	44	6	6	-	144	15	10 △1	-	390
피부 및 운동기 질병	17	17	-	643	47	41 △2	-	1,264	62	47 △3	-	2,669
외인에 의한 질병	8	8	-	176	4	4	-	123	4	4	-	318
기타 질병	14	13 △1	-	251	8	7	1	75	2	1	-	19
계	256	318 △14	4	8,990	262	212 △26	5	10,612	270	181 △29	8	13,155

1. 환자 수와 전귀자와의 불일치는 이월환자가 있기 때문임

2. 전치란 △표는 미치료 출소를 나타냄

### 5. 징벌

#### 가. 징벌사유별 현황

징벌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물품교환, 물품은닉, 물품손괴 등 물품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많았으며, 그 밖에 말싸움, 음식물 절취, 작업재료 남용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었다.

구분	1929	1930	1931	1932	1933	계
항명	2	4	7	3	-	16
말싸움	12	3	4	1	6	26
구타	2	3	2	3	6	16
절식	8	9	12	5	8	42
물품손괴	9	19	39	30	11	108
물품은닉	19	16	36	7	3	71
물품교환	23	4	-	5	1	13
통성담화	1	-	-	-	-	1
외설	15	12	6	3	2	38
재료남용	4	2	19	6	8	39
제품조악	1	-	2	-	2	5
도박유사	-	2	-	-	-	2
도주	-	-	1	-	-	1
기타	31	22	14	16	20	103
합계	107	96	132	79	67	481

#### 나. 징벌종류

징벌의 종류 가운데 5종이 시행되었으며, 작업상여금 계산고 삭감과 경병금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특이한 것은 1931년 중병금의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2명이 있었으며 이 징벌은 사용된 적이 거의 없었다.

	1929	1930	1931	1932	1933	계
질책	12	11	14	36	34	117
상우폐지	-	-	1	3	-	4
작업상여금계산고감삭	18	54	99	33	16	220
경병금(금치)	89	52	15	19	32	207
중병금(암실 구금)	-	-	2	-	-	2
합계	119	117	141	91	82	550

## VII. 교회와 교육

### 1. 교회

교회는 집합교회와 개인교회로 나누어 시행되었으며, 집합교회는 연간 60-70회, 개인교회는 1933년에 4,813회에 4,81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구분		1929	1930	1931	1932	1933
집합교회	횟수	61	60	56	60	70
	인원	27,516	30,572	36,011	28,486	31,067
개인교회	횟수	5,109	4,147	4,255	4,730	4,813
	인원	5,109	4,147	4,255	4,730	4,813

### 2. 교육

교육은 처음 매일 1시간씩 보통학과를 실시하였지만 1923년 2월 교육규정을 제정하여 인격도야를 도모하고 신체발육에 유의하며 처세상 필요한 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요지로 하여 매일 2시간씩의 학과를 교육하였다. 체육은 1932년부터 국민보건체조(라디오 체조)를 아울러 과하고, 매일 아침 30분간씩 이를 실시하였다. 1933년 11월부터 정신수양 및 정조(情操)교육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라디오 청취를 시행 중이었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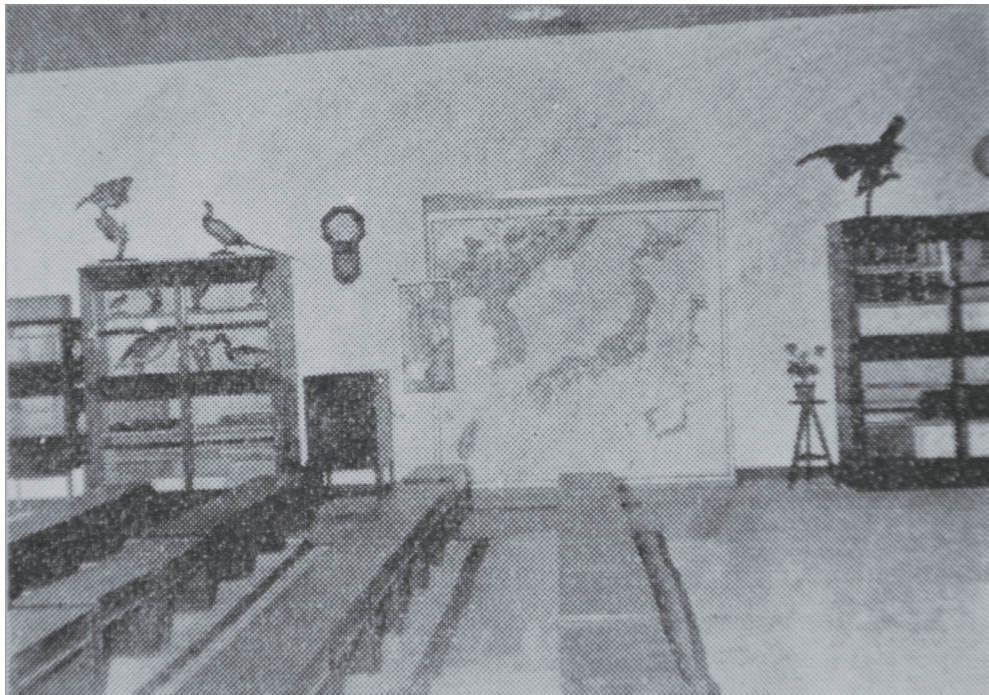
운동회



체조



교육



도서실

소년수형자 교과과정시간표

구분	수신	국어	조선어	산술	실업	체조
제1학년 제2학년	도덕의 요지	발음, 가명, 일상사용 문자, 최근 보통문의 독서방법, 쓰기, 철자, 말하기	발음, 언문, 일상사용 문자, 최근 보통문의 독서, 쓰기, 철자, 말하기	간단한 가감승제	-	
주 수업시간	2	5	2	3	-	6
제3학년 제4학년	도덕의 요지	발음, 가명, 일상에서 알아야 하는 문자, 최근 보통문의 독서방법, 쓰기, 철자, 말하기	일상에서 알아야 하는 문자, 최근 보통문의 독서방법, 쓰기, 철자, 말하기	간단한 가감승제, 주산이 가감승제	-	
주 수업시간	2	5	2	3	-	6
제5학년 제6학년	도덕의 요지	일상에서 알아야 하는 문자 및 최근 사용하는 보통문의 독서방법, 쓰기, 철자, 말하기	일상에서 알아야 하는 문자 및 최근 사용하는 보통문의 독서방법, 쓰기, 철자, 말하기	주산이 가감승제, 보합산 등의 수	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의 대의	
주 수업시간	2	4	2	3	1	6
보습과	도덕의 요지	보통문의 독서방법 쓰기, 읽기, 말하기		주산의 가감승제, 보합산의 제등수	농업, 상업, 공업, 수산업의 대의	
주 수업시간	2	1	-	1	2	6

<참고 문헌>

- 조선치형협회, 조선형무소 사진첩. 1924년 8월 15일
- 조선치형협회, 조선의 행정제도. 1938년 2월 20일
- 형무협회, 조선형무소 연혁사. 일자 미상(일본교정협회 도서관 소장)
- 개성소년형무소, 개성소년형무소 연혁. 1935년(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 교도관의 교정·교화 개념 인식 분석(하)



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교감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IV. 연구결과
- V. 결론

## IV. 연구결과

### 4. 교정과 교화의 속성 추출

3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교정의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사한 속성들을 묶어 개념화를 실시하여,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표 11> 교정의 속성

키워드	영역	설명
교도소	신체의 자유를 제한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행동의 제한, 교도소의 생활지도를 제한함.
행동 제한		
자유위 제한		
구금		
수용자		
수용질서		
격리		
결과를 책임짐		
기결		
미결	타율적 규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 규칙,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
타율적 질서		
질서의 확립		
안전질서	타율적 교육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가르침		
바른 언행 가르치는 것		
교육을 시킴	타율적 변화 요구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짐.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잡다		
습관의 변화		
바로잡는 것	사회 적응성 훈련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성질, 인격, 혹은 성격 분류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로,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 관계의 원만성 따위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		
사회적응 훈련과정		
조그만 사회		
재사회	출소	
출소		

추출된 교정의 속성을 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교도소 수감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 받게 되고, 교도소 내에서 타율적 규제, 교육, 타율적 변화요구, 사회적응성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교도소를 출소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 교정 속성의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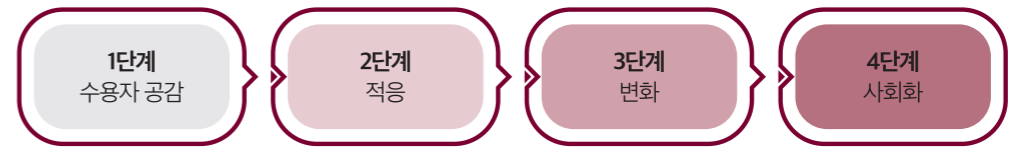


3차 델파이 조사를 거쳐 교화의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유사한 속성들을 묶어 개념화를 실시하였고,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영역화 할 수 있었다. 추출된 교화의 속성을 영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용자에 대한 공감, 수용자의 적응의 과정, 수용자가 변화의 과정,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서 교도소를 출소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2> 교화의 속성

키워드	영역	설명
지속적인 관심	수용자 공감 함양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신념의 함양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보듬다		
공동생활적응	신념 적응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
개선	신념의 변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다.
올바르게 바르게 잡는 것		
시민의식 함양	사회화	인간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 생활하도록 기성세대에 동화하다.
재사회화		
사회복귀		

<그림 3> 교화 속성의 도식화



### 5. 교화교육에 관한 심층면담

설문과 면접조사에는 교화교육에 관한 인식, 심층면담에서는 교화교육에 관한 인식이 교도관의 임용후 교화를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가 교화를 인지하는 시기였고 교화의 필요성에 따라 교화의 긍정적 인식으로 교화의 필요성이 탐색 되었다. 물론 교화교육의 말을 들었을 때 수용자는 교화가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설문과 면접조사에서 교화교육 인식이 형성된 계기는 교도관의 법 집행을 범주화하고 직업적 의무감으로 교화효과를 경험후,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교화로의 신념 구축과 사명감으로 변화이다. 수용자 교화교육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후 배움의 인식은 수용자 입장을 이해하는데 노력했고 교도관들의 역량강화로 교화교육 실천 의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교정의 현실적인 한계를 통해 교화가 될까라는 부정적 관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화교육 형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교화교육이 인본주의적 심리치료와 상담교육으로 교화가 될 수 있다는 신념과 교화 프로그램은 수용자의 자발적 참여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교정시설의 환경적 개선을 촉진하고 교화교육 개선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교도관의 교화교육 신념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환경적 요인과 교도관들의 인권, 고소, 고발로 인해 심리적 위축에 환경적 압박 요인들이 있다. 수행자들이 원하는 교육의 요인으로는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 인문학적 교육, 심리 치료, 상담 치료, 일회성 행사 형태(방송 매체 쾌락적 행사성을 원했다) 등이 있었다. 설문과 면접조사에 교화교육시에 수행자 변화 내용은 인본주의적 인간성 회복이다. 인본적 인성은 긍정적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종 교화교육이 심리적 안정, 자기반성, 출소 후 인식의 변화로 사회관계 회복이 자발적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설문과 면접조사에 교화교육 적용시 교도관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교화교육은 변화의 만족감이 커짐에 따라 교도관이 수용자들의 교화교육 확대를 긍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교도관의 교화인식에서 수형자의 출소까지 교화 적용

교화교육(教化教育) 전반에 관한 교도관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표 13>과 같다. 첫 번째 영역으로는 교화교육(教化教育)에 관한 인식의 영역이다. 상위범주로는 교화 인지시기, 교화의 긍정적 인식, 교화의 부정적 인식으로 범주화하였고, 하위범주로는 교화인지시기, 교화의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교화의 필요성, 교화 가능성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화의 부정적 인식의 범주의 하위범주로는 교화는 불가능하다, 별생각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13> 교화교육에 대한 교도관의 인식(종합분석)

영역	상위범주	하위범주	
교화교육에 관한 인식	교화인지시기	입사 전 인식	
		입사 후 인식	
	교화의 긍정적 인식	긍정적 의미부여	
		교화의 필요성	
		교화 가능성 탐색	
	교화의 부정적 인식	교화는 불가능하다	
		별생각 없다	
	교도교육 인식이 형성된 계기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직업적 의무감 교화 효과 경험 후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인간됨됨이 범죄를 보면서
교화교육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후 변화	역량강화	배움의 인식	
		신념형성	
	교화교육 실천	교화교육의 비중을 증가 수용자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됨	현실적 한계
모르겠다	특이점 없음		
교화교육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	교화교육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통해서	
	수용자 의지에 따라	수용자 참여의지	
		수용자 반성	
		교화교육 동기부여	
	강력한 법 집행	처벌을 통해서	
교도소 환경개선	수감자 환경개선		
	교도관 근무 환경개선		

영역	상위범주	하위범주
교화교육 형성 방해 요인	환경적 요인	수용환경
		운영체계 문제
		교도관 부족
		획일적 운영
	심리적 요인	지나친 인권처우
		교도관의 심리적 위축
수형자들이 원하는 교육	교육	부정적 인식
		선입견
		사회적응 교육
	치료	직업교육
		인문학교육
		심리치료
	일회성 행사	상담치료
		다양한 행사
		인식변화
교화교육 시행 시 수형자 변화 내용	행동변화	반성
		관계변화
	변화 없다	재발방지
		기대할 수 없다
교화교육 적용 시 교도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만족	만족감 커짐
		성취감
	불만족	보람을 느낌
		업무과중

두 번째 영역으로는 교화교육 인식이 형성된 계기 영역으로, 상위범주는 교도관으로 일할때와 일상생활로 구분하였다. 교도관으로 일하면서의 하위범주는 직업적 의무감, 교화를 경험 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의 영역은 교화교육이 필요한 것을 인정한 후 변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는 역량강화, 교화교육 실천, 부정적 관점을 갖게 됨, 모르겠다 였고, 하위범주로는 배움의 인식, 신념형성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교화교육실천의 하위범주로는 교화교육의 비중을 증가, 수용자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함 등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영역은 교화교육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는 교화교육 프로그램, 수용자 의지에 따라, 강력한 법집행, 교도소 환경개선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교화교육프로그램의 하위범주로는 교육을 통해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통해서 등의 범주로 나타났다. 수용자 의지에 따라 하위범주로는 수용자 참여의지, 수용자

반성, 교화교육 동기부여 등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강력한 법집행의 하위범주로는 처벌을 통해서이고, 교도소 환경개선의 하위범주로는 수감자 환경개선과 교도관 근무 환경 개선으로 범주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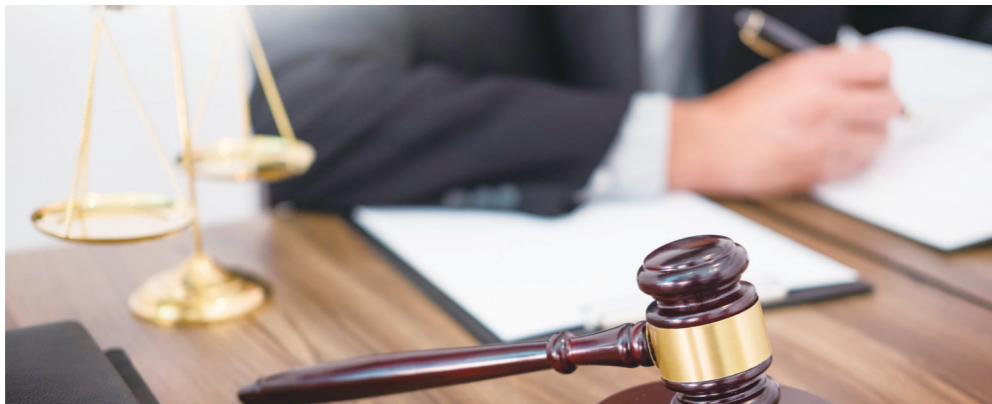
다섯 번째는 교화교육 형성 방해 요인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로는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환경적 요인의 하위범주로는 수용환경, 운영체계 문제, 교도관 부족, 획일적 운영, 지나친 인권처우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심리적 요인의 하위범주로는 교도관의 심리적 위축, 부정적 인식, 선입견 범주로 구분하였다.

여섯 번째로는 수행자들이 원하는 교육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는 교육, 치료, 일회성 행사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교육의 하위범주로는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인문학교육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치료의 하위범주로는 심리치료, 상담치료범주로 구분하였다. 일회성 행사의 하위범주로는 다양한 행사 범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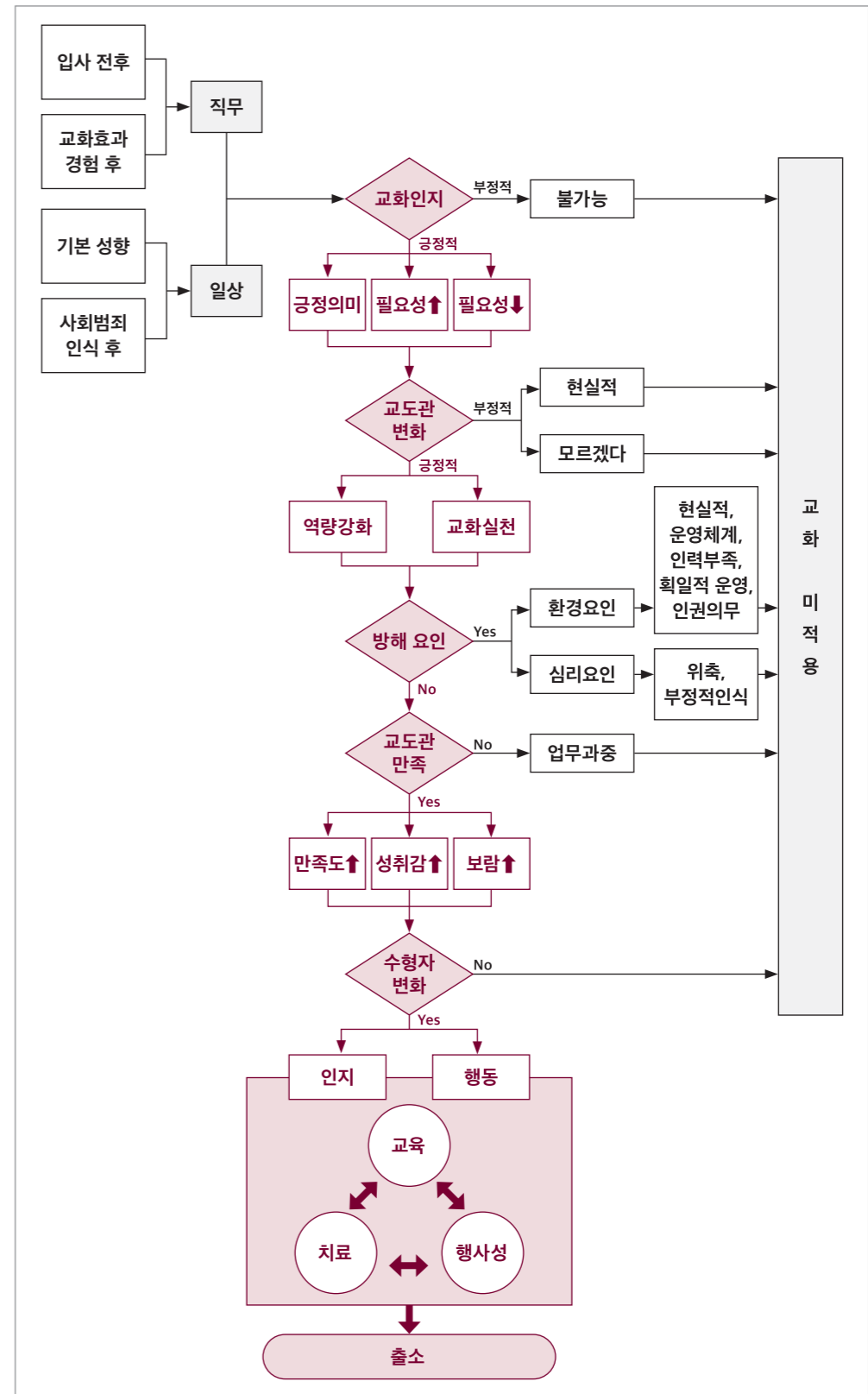
일곱 번째 영역으로는 교화교육 시행 시 수행자 변화 내용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로는 인식변화, 행동변화, 변화없다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인식변화의 하위범주로는 심리적 안정, 반성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행동변화의 하위범주로는 관계변화, 재발방지범주로 구분하였다. 변화없다의 하위범주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범주로 구분하였다.

여덟 번째 영역으로는 교화교육 적용이 교도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영역이다. 이 영역의 상위범주는 긍정적 만족과 불만족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만족의 하위범주로는 만족감 커짐, 성취감, 보람을 느끼는 범주로 구분하였다. 불만족의 하위범주로는 업무과중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교도관의 교화인식에서 수행자의 출소까지 교화적용을 위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식화하면 앞쪽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교화 체계 흐름도



## V. 결론

교도관들의 교화교육은 근무자 개인이 신념을 가져야 하고 수용자에 대한 책임감과 역량강화를 느낄 때 '교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교화할 수 있다'라고 나타났다. 소년·성인 수용자는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교화(教化)교육의 자발적 배움을 통해 인성 변화가 교화교육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수용자는 사회생활에서의 정책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정의 미래 교도관은 교화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개인 면담, 심층 상담, 수용자 심리치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수용자들과의 지속적 상담을 통해 교도관과 수용자 상호 신뢰감을 회복하고 수용자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수용자의 자발적 교화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상 연구결과를 보면, 교도관들이 느끼는 교화(教化)는 개별처우와 맞춤형 처우로 실질적인 교화교육(教化教育)이 확대 개편이 필요하였다.

소년·성인 수용자들의 교화교육은 출소 후 사회복귀 후에도 교화로의 신념은 수용자가 자발적인 개선이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화프로그램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개별처우와 지속적 효율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교도관들의 현실적 실천의지와 역량강화가 교화로의 효과를 더욱 제고하고 교도관이 만족감, 성취감, 보람을 느낄 때 교화로의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관계 당국의 지원과 현장 교육 강화의 요구가 판단된다. 장래를 선도하자면 수형자들의 분류 심리치료와 사회와 연계성을 강화한 범죄별 치료공동체, 분야별 치료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출소 후 수용자(收容者)들이 원하는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할 수 있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도적 방해요인도 제거하고 심리적 업무 만족감, 성취감, 보람에 대한 사기 저하로 교화교육의 방해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수용자들의 교화로의 신념 변화가 재범 방지로 이어지고 국가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역할이 곧 교도관들에 의해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교도관이 느끼는 수용자의 장래는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가 수용자의 질적 향상에 따라 범죄 예방에 중요하다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중간처우 강화로 사회와 연계하는 교화적 치료공동체가 필요하고 국가적 차원의 독립된 외청으로 하는 '교화청' 개칭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도관들의 역량강화와 자존감 향상이 곧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화교육(教化教育) 시행 시 수형자 변화에는 수용자들의 교화 신념으로 출소 후 치료가 요구되는 수용자는 사회 연계를 통해 개별적 치료공동체로 정착할 수 있다. 수용자의 재사회화와 중간처우 및 교화로의 신념 변화 강화를 통해 재범방지가 국가적 발전이고

수사기관, 재판기관, 집행기관의 기회비용 감소와 재범 방지로 국가 발전에 이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교도관들의 교화교육(教化教育) 역량강화와 자존감 회복은 곧 수용자의 재사회화 지원 교육의 확대 개편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화교육 적용 시 교도관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공헌할 수 있고 수용자 재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는 교도관들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가 자존감 향상과 자기효능감, 자기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용자의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장기적으로 교정공무원들이 교화(教化)로의 인식에 따라 21세기 교정교육(矯正教育)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화교육(教化教育)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부족한 선행연구이다. 교도소와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극히 적어 선행된 연구 실적물을 충분히 연구에 활용할 수 없는 제한점이 존재하였다. 토론자의 선행연구는 토론을 통하여 교정과 교화의 문제 제기가 없는 형편이다. 둘째, 전문가 토론자 선정 시 특정 지역 편중이다. 국가직 교정공무원은 잦은 전국이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일대일로 만나서 근무를 해야 하는 근무 환경상 지역적 제한이 있다. 전문가 토론자 선정 시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서 고루 추천받아 선정하여야 설문 조사의 객관성을 더욱 담보하고 보장받을 수 있으나 토론자 추천 시 주로 연구자의 근무지 연구나 인맥을 위주로 추천받게 됨으로써 특정 지역 교도소 교도관이 편중되어 선정되고 통계적 정량분석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교도관들의 ‘교정(矯正)’에서 ‘교화(教化)’로의 인식 변화에 대한 결론에 따른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도관을 교화관(教化官)으로 개칭 시 나아갈 자세와 방향적 측면이다. 교화의 이론적 정립이라고 할 수 있고 교화관(教化官)의 교화로 나아가야 할 교화의식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교화관(教化官) 맞춤형 선진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화교육에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의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도 하나의 대안이고 교화 관련 연구 제안도 필요하다. 교화관(教化官)의 만성적 인력 부족 해결과 교도관들의 인식이 교화로 가야 한다는 인식, 개방적인 열린 교화의 자세 추구, 사회적 외부 전문인력을 통한 종합교화 대책 시스템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전문 치료공동체의 활용과 교화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공안직군 제복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화에 중추적 노력(努力)을 하고 교도소 내 교화교육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대한 필요한 보상과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음지에서 양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이 필요하다. 재범방지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교화관이 사회 범죄 예방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음에 대한 교화 홍보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교정본부(矯正本部)에서 나아갈 방향 측면이다. ‘교화교육(教化教育)’에 대한 교도관들의 조기 인지와 긍정적 개념 정립을 위해 모든 교도관이 임용 직후에 의무적으로 받는 초기 임용 교육(6주간)에서 ‘교화’의 개념 정립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교정 당국의 교육을 확대,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수용자 교화교육(教化教育)을 위해 치중되었던 당국의 정책 시행과 지원 노력은 교도관들의 ‘교화교육’ 강화와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교도관 보수교육 계획의 정밀 수립과, 발전적인 교화프로그램의 확대 개발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여 지속해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교정본부는 교도관(矯導官)들의 교화교육(教化教育)에 대한 중추적 인식 변화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화관(教化官)으로 개칭하고 교화의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교화관의 교화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량성, 실천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우수한 교화관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저조한 교도관에게는 지속적인 교육과 독려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교화교육의 인식 변화와 실천을 증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회(社會) 발전적 측면이다. 교화 담당관제(擔當官制) 운영으로 갑작스러운 구속에도 밖에 남겨진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범죄 감염을 막을 수 있고 교도소 담당관을 지정하여 사회 복지관과 단체를 연계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생계의 연결을 돕고 심리치료 연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와 출소자를 연계하여 사회 치료공동체 센터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정 당국이 교도소 수용자들의 교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하여 인문학적인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내면적 도덕성 인지를 통하여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자각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교화교육의 최대 성과를 거둬오르며 최종적으로 안전한 국가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세심한 정책의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세워 각종 법률전문 분야별 분업화로 교화관의 권한 확대 개편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 상담 및 각종 범죄별 치료공동체로 치료하고 현재 소년·성인 수용자들의 상담 치료를 위해 각종 범죄의 유형별에 따라 사회와 연계하여 맞춤형 치료인 마약, 알코올, 성범죄 등 범죄별 사회 공동체로 치료 공동체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넷째, 국가정책(國家政策) 발전적 측면이다. 교화 측면은 국민의 안전 일선에서 담보하고 있어 국무회의 참석과 안전 보좌관제 도입과 별도의 독립 교화청이 필요하다. 사회 안전 교도관 책임제와 발언대를 신설하여 사회 교화(教化)의 안전망과 생활 변화를 위해서 현실적 사회역량을 강화하고 교정책임 담당 관제의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화개념(教化概念)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교정 최고 기관의 명칭을 현재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정본부'에서 '교화본부'로, '지방교정청' 역시 '지방교화청'으로 개칭하는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자 종류에 따라, 개별적 범죄에 따라 성폭력범죄, 알코올범죄, 마약범죄, 정신질환범죄의 가상화면을 활용한 교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범죄별 수용자 교화교육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는 수용자에게 상호 작용하는 범죄 예방 수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도관들은 교정에서 교화로의 변화 방법을 인식하고 교도소와 수용자의 부정적 이미지와 신념의 변화를 위해서 인문학, 심리학, 의학, IT, 가상현실치료 등 학제간 개입을 기반한 교화교육의 창의적 발현이 필요하다. 실질적이고 가상현실(假想現實) 교화(教化) 교육을 통해 교화프로그램 개발부를 신설하고 실질적인 학제간 전문가를 발굴하는 등 위기의 사회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가상현실 교화는 세심하고 심도(深度)있는 다양한 범죄별 사회 현상과 현실을 반영하여 알코올치료, 마약, 성범죄 등의 다양한 범죄별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고 체험(體驗)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 우수한 교정 퇴직자들의 활용방안과 범죄예방에 국가적인 적극적 활용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권이종 (2004). 사회성지도란, 서울: 한국학술정보문교부.
- 권중돈 편 (2005).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학지사.
- 김동배 편 (2000).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 김성화 (2006). 수형자 교정교화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김영식 (2021). 교정 용어사전, 서울: 박영사.
- 김용준 편 (1997). 교정학, 서울: 고시원.
- 김응렬 (2002). 사회 조사방법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진영 (2011). 교정의 개선방안과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10), pp.29-60.
- 김화수 편역 (2003). 외국 교정관계법령집, 서울: 경기대학교.
- 남상철 (1998). 교정의 역사적 과정과 발전적 전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류창현 (2022). 청소년 ADHD와 CD를 위한 가상현실(VR) 활용 심리치료 효과의 함의,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2(1), pp.25-55.
- 류창현 (2022). 분노학, 서울: 박영사.
- 박병호 (1986). 사회과학에서의 장이론, 서울: 민음사.
- 박상기 (1998). 형사정책,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박정성/김호진 (2012). 민영교도소에 있어서 교정과 회복적 사법, 한국치안행정논집 9(3), pp.87-110.
- 배임호 편 (2001). 교정복지론, 서울: 양서원.
- 법무부 교정본부 (2010). 대한민국 교정사, 서울: 법무부.
- 법무부 교정사고 통계 분석 (2021).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 신석환 편 (2002). 교정복지론, 서울: 양서원.
- 신용해 (2012). 수형자 교정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연구 (57), pp.61-104.
- 유주영 (2021).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도소의 기능 변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연담, 신기숙, 최윤석 (2020). 교정상담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이영근 (2017). 교정교화청 신설과 교정조직의 효과성 극대화. 교정연구 (77), pp.3-30.
- 이종식 (2011). 현대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가치관교육의 재개념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대학원.
- 정철상 (2001). 청소년 수련활동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조광근 (2013). 나이스 교정학개론, 서울: 시대고시기획.

- 최옥채 (2005).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선균 (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양서원.
- 허주욱 (2003). 교정학, 서울: 박영사.
- 홍남식 (2002). 미국의 교정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진배 (2020). 교정단상, 서울: 부크크(주)
- 형집행법 및 형집행법 시행령 규칙, (2021).

#### [국외 문헌]

- Aos, S., M. Miller, & E. Drake, (2006). Evidence-Based Adult Corrections Programs: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06-01-1201.
- Allen J., (1988). Administering quality education in an adult correctional facility, Community Services Catalyst 18(4), pp.28-29.
- Batiuk M., (1997). The state of post secondary correctional education in Ohio.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48(2), pp.70-72.
- Batiuk M., Moke P. & Rountree P., (1997). Crime and rehabilitation: Correctional education as an agent of change—A research note. Justice Quarterly 14, pp.167-180.
- Batchelder, J. S., & J. R. Rachal, (2000). Efficacy of a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Program in a Prison Setting: An Experimental Study, Adult Education Quarterly 50(2), pp.120-133.
- Chappell C., (2004). Post-secondary correctional education and recidivism: A meta-analysis of research conducted 1990-1999,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55, pp.148-169.
- Costelloe, A. and Warner, K.k (2014).k Prison education across Europe: policy, practice, politicsk London Review of Education 12(2), pp.175-183. <https://doi.org/10.18546/LRE.12.2.03>.
- Crayton, A., and S. R. Neusteter, (2008). The Current State of Correctional Education, Paper prepared for the Reentry Roundtable on Education, New York: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Prisoner Reentry Institute.
- Duguid, S., (2000). Can prisons work? the prisoner as object and subject in modern correction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Gehring T., (2000). Recidivism as a measure of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 success, Journal of Correctional Education 51, pp.197-205.
- Giles, M., Paris, L. and Whale, J., (2016). The role of art education in adult prisons: The Western Australian experience.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62(6), pp.689-709. <https://doi.org/10.1007/s11159-016-9604-3>.

- Ryu, C. H, Kim, K. W., Lee, B. C., Yeon, S. J., Lee, J., & You S. H., (2016). Effects of an Anger Management Virtual Reality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rogram on EEG Patterns among Destructive and Impulse-Control Disorder Patients, Journal of Medical Imaging and Health Informatics 6, pp.1319-1323.
- Ryu, C. H., (2020). Effects of Virtual Reality on Neuro-Cognitive and Behavioral Skills in Alcohol-Dependent Patients: A Quantitative Electroencephalography Imaging Investigation, Journal of Medical Imaging and Health Informatics 10(1), pp.2279-2285.



# 교도관의 적극 교정처우의 한계 및 개선 방향

- 수용자의 권리구제 실태를 중심으로 -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I. 들어가며
- II. 이론적 배경
- III. 권리구제 실태
- IV. 개선 방향
- V. 나아가며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주제어: 교정공무원, 적극교정처우, 수용자권리구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수용자권리구제법



## I. 들어가며

지난 5년간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 차례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교정공무원의 평균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뉴시스, 2022. 10. 4).<sup>1)</sup> 또한 법무부가 2023년 6월에 전체 교정공무원<sup>2)</sup>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수용질서가 어떤가'에 대한 질문에 조금 나쁨 37.4%, 매우 나쁨 21.5%, 보통 27.4%, 조금 좋음 10.0%, 매우 좋음 3.6%로, 58.9%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3.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자살로 인한 경우가 24명(38.7%)에 달하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이나 교정관리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2017년 908건에서 2021년 1,278건으로 140% 정도 증가하였으며,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은 73건에서 111건으로 1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의 자살 관련 사건은 46건에서 142건으로 3배 정도 늘었고, 수용자 간 폭행도 455건에서 598건으로 1.3배 정도 증가하는 등 교정시설의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마인드포스트, 2022. 10. 4).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교정공무원들에게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원하는 등 본연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물리적인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신적 장애를 안은 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가 정의하는 이른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교정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교정처우에 임할 수 없는 환경적 요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의 적극 교정처우의 장애요인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적 환경 및 그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관련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1)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장애 진단도구(MHA-CO)를 개발하여 외상중후군, 불안, 물인간화, 게임중독, 알코올중독, 무능력, 공격성, 우울 등 8개 위험요인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16-2018-2020년 등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주된 증상으로 게임중독(5.3%), 알코올중독(4.1%), 무능력(3.6%)이 나타났고, 공격성을 보이는 교정공무원이 2016년 1.7%에서 2020년 3.2%로 증가하였다(뉴시스, 2022. 10. 4).

2) 교정공무원은 2017년 15,504명, 2018년 15,632명, 2019년 15,733명, 2020년 16,082명, 2021년 16,248명이다(교정본부, 2022: 28).

## II. 이론적 배경

### 1. 적극 교정처우의 개념

적극행정은 「헌법 제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성실의 의무를 기초로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적극행정의 반대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극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적극 교정처우란 교정공무원이 형집행법상 교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행하는 적극적인 직무집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형집행법상 제2편 수용자의 처우에 해당하는 일련의 교정공무원의 직무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매년 법무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정부혁신 추진계획 중 교정본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전무하다. 2023년도의 경우에도 법무부는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모두 11개 세부과제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지만 교정본부가 시행 중인 적극행정 과제는 찾을 수 없다.<sup>3)</sup> 다만 2018년도 이후 법무부의 성과관리계획을 통하여 교정본부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정행정이나 교정처우 정책 여부를 살펴볼 수는 있다. 2018년도에는 인터넷으로 접견예약 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폰으로 수용자와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고, 명예교도관 위촉제 도입, 교정홍보관을 설치하여 교도소체험의 장을 만들었다(법무부, 2019: 5). 2019년에는 대구·안양·속초 교도소 이전을 위한 교도소 신축공사의 추진, 교정시설 난방공사, 온실난방공사, 수용자 티셔츠 지급, 개인용 식판 지급 등을 확대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법무부, 2019: 16-17). 법무부가 2020년 5월에 발표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성과관리계획에서 교정본부는 앞서 2019년도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수용동 별 공동세탁기 2대 이상 지급 추진, 양변기 화장실 추진, 강원북부, 거창교도소 이전 공사 등을 선정하였다(법무부, 2020: 25-26).

또한 법무부가 2022년 3월에 발표한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수용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노후시설의 정비와 과밀수용 해소, 교정정책의 홍보강화, 스마트접견 대상범

3) 이 자료는 정부가 운영하는 혁신24 웹사이트에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세부추진계획 및 결과 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혁신24, <https://www.innovation.go.kr/>).



위 확대, 살인·성폭력 등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대상 정밀분류심사, 상담 등 집중관리,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의료처우 개선 등의 계획이 담겨있다(법무부, 2022: 343-346).

그런데 교정본부의 성과관리 계획은 적극행정 또는 적극적인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교정처우의 기본 속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지만 과밀수용 해소나 의료처우 개선, 심리치료프로그램 확대 등 대부분의 과제가 교정조직이나 교정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렵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의 이전은 국가의 예산지원과 자치단체의 토지제공 등의 협조와 지역주민의 수용 여부 등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때 가능하다(박은주, &백진, 2018).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관 간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대로 교정시설의 신축이나 이전은 매우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김도우, &임기택, 2020).

이러한 외부적 요인은 교정당국이 행정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수용자의 불만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반발을 야기하며, 상호 갈등적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이어진다. 교정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행정업무와 개인적 대응 등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업무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직무몰입감이 떨어지며, 우울증 등 정신장애적 질환을 경험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김금자, &도광조, 2020).

이러한 상황은 교정당국과 교정공무원 모두 적극적인 교정행정이나 교정처우를 어렵게 하는 장애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교정공무원의 게임중독, 알코올중독, 공격성 등의 증상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2022. 10. 4). 이는 교정당국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정당국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정공무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에서도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이용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최초 시행년도에 비해 2021년에는 371%나 증가하였다(교정본부, 2022: 40).

## 2. 관련 선행 연구 분석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정신장애 및 이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교정공무원의 교정행정이나 교정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장애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교정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에서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에서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소진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점미, &문승연, 2016). 또한 교정본부가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과밀수용 문제가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다. 즉 교정공무원들은 과다한 수용인구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감과 재소자로부터의 언어적·신체적 폭행, 정책적 소외와 국민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우울감에 빠지고, 심한 경우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주, 조은철, &이준신, 2019).

한편, 교정공무원이 경찰공무원에 비해 모든 간이 정신진단검사의 하위요인에서 경찰공무원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창수, 이용주, &홍상욱, 2021).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으로 특수건강검진 등의 혜택을 받지만, 교정공무원은 일반공무원들과 같이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이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광훈, 박종익, 이수정, &장광호, 2017). 즉 직무영역에서 접촉하는 대상자 및 업무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자존감이 극도로 낮다고 분류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 생산직 근로자 등과 비교했을 때에도 교정공무원들은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여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교정공무원들의 불안정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부분이 수용자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의 폭행, 욕설, 무례함 등이 가장 괴롭다고 답하였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 심리적 안녕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관계갈등과 직무불안이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근영, &서광보, 2019). 또한 이직의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기회가 된다면 이직을 하고 싶다는 교정공무원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았다. 그리고 이직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낮은 직급, 수용자와의 스트레스, 교정업무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등으로 나타났다(안지선, &진중순, 2022).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공통적으로 교정공무원들은 직무스트레스를 매우 심하게 느끼고 있고,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수용자와의 관계, 직무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낮은 자존감, 이직의도, 탈진감 등으로 이어져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의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특히 수용자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진정 고소고발, 행정소송 등의 경험까지 더해질 경우 소극적인 직무태도를 낳게 된다(허용훈, &문유석, 2021).

### Ⅲ.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와의 갈등적 상황

#### 1. 수용자 청원

「헌법 제26조 제1항」은 국민의 청원권을, 「제2항」은 국가의 청원 심사의무를 규정하였다. 수용자의 청원에 관해서는 「형집행법 제117조」에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며, 소장은 이를 개봉해서는 안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청원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이때 교도관이 참여해선 안 된다. 청원 결정은 문서로 하며, 소장은 그 결정서를 접수할 경우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표 1〉 수용자 청원

구분	계	가석방 분류	거실	이송	의료 처우	직원 관련	부당 처부	조사 징벌	부식 구매	작업	영치 금품	기타
2017	744 (100)	26 (3.5)	39 (5.2)	80 (10.8)	84 (11.3)	181 (24.3)	21 (2.8)	67 (9.0)	10 (1.3)	22 (3.0)	28 (3.8)	186 (25.0)
2018	772 (100)	20 (2.6)	45 (5.8)	60 (7.8)	88 (11.4)	177 (22.9)	13 (1.7)	109 (14.1)	15 (1.9)	13 (1.7)	27 (3.5)	205 (26.6)
2019	558 (100)	10 (1.8)	40 (7.2)	45 (8.1)	101 (18.1)	125 (22.4)	28 (5.0)	99 (17.7)	10 (1.8)	15 (2.7)	5 (0.9)	80 (14.3)
2020	593 (100)	11 (1.9)	35 (5.9)	37 (6.2)	77 (13.0)	117 (19.7)	42 (7.1)	68 (11.5)	23 (3.9)	16 (2.7)	21 (3.5)	146 (24.6)
2021	558 (100)	22 (3.9)	24 (4.3)	43 (7.7)	69 (12.4)	105 (18.8)	17 (3.1)	44 (7.9)	16 (2.9)	8 (1.4)	19 (3.4)	191 (34.2)

자료: 교정본부, 2022, 124, 재구성.

지난 5년간 청원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매년 기타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원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평균 21.6%에 해당한다. 다음이 의료처우 13.2%, 조사징벌 12.0% 등의 순이다.

〈표 2〉 수용자 청원 결과

구분	청원건수	인용	기각	각하	취하	기타
2017	744(100)	0(0.0)	166(22.3)	129(17.3)	422(56.7)	27(3.6)
2018	772(100)	0(0.0)	217(28.1)	147(19.0)	405(52.5)	3(0.4)
2019	558(100)	22(3.9)	144(25.8)	81(14.5)	308(55.2)	3(0.5)
2020	593(100)	84(14.2)	167(28.2)	159(26.8)	183(30.9)	0(0.0)
2021	558(100)	10(1.8)	219(39.2)	179(32.1)	149(26.7)	1(0.2)

자료: 교정본부, 2022, 126, 재구성.

지난 5년간 수용자 청원 중 인용된 것은 4.0%, 기각 27.7%, 각하 21.9%, 취하 44.4%, 기타 0.94% 등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청원의 사유가 아예 될 수 없는 경우이고, 취하는 중간에 청원자가 청원 의사를 걷어 들인 것이다. 따라서 전체 3,225건 중 116건, 4.0%만이 수용자의 의견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용자들의 청원 중 46.8%가 직원 관련, 의료처우, 조사 징벌 등의 불만으로 인한 것이고, 취하가 44.4%라는 점은 수용자의 청원이 교도관의 처우나 교정시설의 교정행정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김경태, 2019).

##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표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수용 여부

구분	진정건수	권고 및 교정본부 수용 여부				기각
		권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2017	4,528(100)	10(0.2)	10(100.0)	0(0.0)	0(0.0)	4,518(99.8)
2018	4,322(100)	19(0.4)	18(94.7)	1(5.3)	0(0.0)	4,303(99.6)
2019	4,211(100)	18(0.4)	14(77.8)	4(22.2)	0(0.0)	4,193(99.6)
2020	4,124(100)	21(0.5)	20(95.2)	1(4.8)	0(0.0)	4,103(99.5)
2021	4,522(100)	23(0.5)	19(82.6)	2(8.7)	2(8.7)	4,499(99.5)

자료: 교정본부, 2022, 127, 재구성.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2017~2021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총 진정 건수는 21,707건으로 매년 평균 4,323건에 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중 21,616건(99.6%)을 기각하였고, 91건(0.4%)에 대해 교정본부에 그 개선을 권고하였다. 교정본부는 권고건수 91건 중 수용 81건(89.0%), 일부수용 8건(8.8%), 불수용 2건(2.2%)을 행하였다. 결국 교정본부가 전부수용 또는 일부수용한 것을 포함하면 총 21,707건 중 89건만이 실질적으로 수용자의 인권침해 주장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되어 교정행정에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수용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평균 매년 4,323건을 진정한 것은 산술적으로는 지난 5년간 평균 교정공무원 15,840명 중 27.3%가 계속하여 진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교정본부, 2022. 8.). 또한 평균 교정공무원 15,840명 중 실제 수용자들과 교정시설에서 접촉하는 보안 직무에 속하는 교정공무원은 평균 10,275명이다. 따라서 이들을 기준으로 보안직 교정공무원 중 42% 정도가 매년 수용자들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하고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는 진정에 대하여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현장조사나 감정, 사실이나 정보의 조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수용자 처우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보안직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로부터

인권침해 여부 진정을 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서면자료 제출이나 출석조사, 교정시설을 점검하는 현장조사 등을 본인 혹은 주변 동료가 받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기가 매우 저하될 여지가 크며, 나아가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김묘연, & 김형빈, 2023).

## 3. 형사 고소고발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2017~2021년간 교정공무원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는 총 4,140건으로 평균 매년 825건으로 나타났다. 고소나 고발을 당한 교정공무원은 모두 8,569명이고, 매년 평균 1,714명에 달한다.

총 고소고발 4,140건 중 교정공무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한 사건은 2019년 1건, 2020년 3건이다. 고소나 고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된 경우는 72.1%에 달한다. 즉 100건 중 72건은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애초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경찰을 거쳐 또는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소·고발 당사자인 교정공무원이나 교정시설의 장은 관련 사건에 대응을 해야 하는 고충이 따른다. 또한 〈표 3〉에서와 같이 매년 고소·고발은 825건이고, 피당사자는 1,714명이다. 이는 수용자가 고소·고발 1건 당 교정공무원 2명 정도를 피당사자로 지목하였거나 특정 교정공무원의 경우 1번 이상 고소·고발을 당하였을 개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표 4〉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대상 고소 및 고발

구분	건수	피소 인원	처리 중	결과							
				계	무혐의	죄안됨	기소 유예	기소	공소 권무	각하	기타
2017	783	1,586	-	1,586(100)	407(25.7)	1(0.1)	-	-	13(0.8)	1,035(65.3)	130(8.2)
2018	855	1,873	-	1,873(100)	430(23.0)	1(0.1)	-	-	33(1.8)	1,247(66.6)	162(8.6)
2019	916	1,886	13	1,873(100)	326(17.4)	4(0.2)	-	1(0.1)	19(1.0)	1,424(76.0)	99(5.3)
2020	867	1,694	24	1,670(100)	299(17.9)	1(0.1)	-	3(0.2)	10(0.6)	1,264(75.7)	93(5.6)
2021	719	1,530	411	1,119(100)	169(15.1)	11(1.0)	-	-	5(0.4)	859(76.8)	74(6.6)

자료: 교정본부, 2022, 128, 재구성.

이에 대하여 남재성의 연구(2015)에서는 교정공무원의 직무상 위험요인이라고 정의하고,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어 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4.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수용자는 교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며, 의결은 동법 제43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정본부는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교정청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sup>4)</sup>

〈표 5〉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수용자의 행정심판 청구 및 결과

구분	청구건수	진행중	결과					
			계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2017	437	-	437(100)	-	3(0.7)	199(45.5)	103(23.6)	132(30.2)
2018	310	-	310(100)	1(0.3)	1(0.3)	160(51.6)	58(18.7)	90(29.0)
2019	509	-	509(100)	-	1(0.2)	165(32.4)	173(34.0)	170(33.4)
2020	630	-	630(100)	-	-	154(24.4)	274(43.5)	202(32.1)
2021	443	48	395(100)	-	2(0.5)	108(27.3)	94(23.8)	191(48.4)

자료: 교정본부, 2022, 129, 재구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총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329건으로 매년 평균 469건이다. 이 가운데 각 지방교정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하여 심리가 종결된 것은 2,281건이며, 이 중 전부인용된 것은 1건(0.0%), 일부인용 7건(0.3%), 기각 786건(34.5%), 각하 702건(30.8%), 취하 785건(34.4%)로 나타났다. 즉 기각과 각하 및 취하를 모두 합하면 99.7%로 이로 인한 교정공무원의 행정 피로감, 행정 당사자의 직무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의 재결인 각하가 30.8%에 달하여 과연 교정기관의 교정

4) 위원장은 지방교정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교정청 소속 공무원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법률학 교수, 전직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교정본부, <https://www.moj.go.kr/>).

처우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또는 수용자에게 청구인 적격성을 부여하여야 하는가에 따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김남철, 2012).

#### 5.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용자가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368건으로 매년 평균 74건 정도이다. 이 가운데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종결된 사건은 313건이며, 인용 4건(1.3%), 기각 93건(29.8%), 각하 119건(38.1%), 취하 92건(29.4%)로 나타났다.

〈표 6〉 수용자의 행정소송 청구 및 결과

구분	청구건수	진행중	결과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2017	70	-	70(100)	2(2.9)	24(34.3)	28(40.0)	16(22.9)
2018	86	2	84(100)	6(7.1)	28(33.3)	29(34.5)	21(25.0)
2019	91	3	88(100)	-	27(30.7)	39(44.3)	22(25.0)
2020	60	6	54(100)	1(1.9)	12(22.2)	17(31.5)	24(44.4)
2021	61	44	17(100)	-	2(11.8)	6(35.3)	9(52.9)

자료: 교정본부, 2022, 130, 재구성.

즉 인용된 4건을 제외하면 97.3%가 교정기관이 사실상 치르지 않아도 될 소송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셈이다. 특히 각하와 취하의 비중이 67.5%를 차지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교정기관 전체의 인력을 수용자 처우에 집중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여부에 대해 형식적인 요건이 아닌 실질적인 구제 효과의 실익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광수, 2014).

## 6. 헌법소원

수용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표 7〉은 수용자의 헌법소원 청구 및 결과이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43건을 청구하였고,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종결 처리 건수는 218건이다.

〈표 7〉 수용자의 헌법소원 청구 및 결과

구분	청구건수	진행중	결과				
			계	인용	기각	각하	취하
2017	70	-	70(100)	-	10(14.3)	49(70.0)	11(15.7)
2018	32	3	29(100)	1(3.4)	3(10.3)	20(69.0)	5(17.2)
2019	29	1	28(100)	-	4(14.3)	23(82.1)	1(3.6)
2020	54	3	51(100)	-	1(2.0)	45(88.2)	5(9.8)
2021	58	18	40(100)	-	2(5.0)	28(70.0)	10(25.0)

자료: 교정본부, 2022, 131, 재구성.

이 가운데 인용은 1건(0.4%), 기각 20건(55.0%), 각하 165건(75.7%), 취하 32건(14.7%)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각하 건수와 스스로 포기한 취하 건수를 합하면 99.4%에 달한다.

수용자들의 과도한 헌법소원으로 인한 교정행정의 업무 부담과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불가피할 것으로 특히 기본적인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 제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성을 보인다.



## 7. 손해배상청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즉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표 8〉은 수용자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그 결과이다. 이 기간 동안 수용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건은 모두 782건이며, 이 가운데 344건이 진행 중, 종결 건은 438건이다.

〈표 8〉 수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결과

구분	건수	진행 중	결과			
			계	원고승소	원고일부승소	원고패소
2017	94	6	88(100)	-	7(8.0)	81(92.0)
2018	126	16	110(100)	-	9(8.2)	101(91.8)
2019	152	48	104(100)	-	5(4.8)	99(95.2)
2020	203	99	104(100)	-	2(1.9)	102(98.1)
2021	207	175	32(100)	-	2(6.3)	30(93.8)

자료: 교정본부, 2022, 132, 재구성.

종결된 438건 중 원고전부승소건은 없고, 원고일부승소건은 25건(5.7%), 원고패소 413건(94.3%)에 달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과다하면 지리한 법정 다툼으로 교정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교정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나아가 주변 교정공무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교정공무원과 수용자 간 냉소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박정수, &진중순, 2016).

## IV. 개선방향

### 1. 가칭「수용자권리구제법」의 제정

가칭 「수용자권리구제법」은 미국 연방법인 교도소 소송개혁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REA, 42 USC § 1997e)의 입법 취지와 그 내용을 참고로 한 것이다. PREA는 1996년에 제정된 연방법으로 수용자가 폭증하면서 수용자들의 권리구제 소송이 함께 증가하자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적 구제 수단의 소진 또는 전치주의(Exhaus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이다(42 U.S.C. § 1997(e)(a)). 이는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교도관을 고소하려는 경우에는 교정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구제절차를 통해 먼저 이의신청과 구제청구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만 교정공무원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각(Dismissal)이다(42 U.S.C. § 1997(e)(c)). 이는 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교정시설이 규정하고 있는 교정행정 및 교정처우 조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자의 소송내용이 사소한 교정기관 조치에 해당되거나, 수용자의 소송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수용자가 교정기관에 구제가 부여될 수 있는 청구를 행하지 않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피고로부터 금전적 구제를 구하는 경우 등에는 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셋째, 변호사 비용(Attorney's fees)의 제한이다(42 USCA § 1997e(d)). 이는 수용자가 제기한 수용자가 승소하더라도 수용자의 변호사 비용을 피고인 교정기관 혹은 교도관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교도관 등이 법령을 위반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발생한 비용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호사 비용을 부담 지운다는 것이다. 수용자가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 변호사 비용 전액을 피고인 교도관이나 교도소 측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2021: 14).

넷째, 구제의 제한(Limitation on recovery)이다(42 USCA § 1997e(e)). 수용자는 구금 중에 입은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해에 대해 사전에 신체적 상해를 보여주지 않거나 성폭력위원회의 결정 없이 연방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신체적 상해를 유발하지 않거나 성적 학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소송비용의 삼진아웃제(Filing Fees and the Three Strikes Provision)이다.

수용자는 이전에 3건의 소송이 사소하거나 악의적이거나 구제 청구를 진술하지 않음으로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을 법원에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심각한 신체적 부상의 임박한 위협에 처한 수용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미연방법이 포마 파우페리스(forma pauperis, a poor person)에게는 법원 소송 수수료를 면제하나, 소송을 남용하는 수용자의 경우 이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PREA의 이러한 규정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수용자의 지난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중 99.6%가 기각, 고소·고발 99.9%가 각하 또는 무혐의, 행정심판 99.7%가 기각·각하·취하, 행정소송 97.3%가 기각·각하·취하, 헌법소원 99.4%가 기각·각하·취하, 손해배상청구 패소 94.3% 등의 현실에 비춰볼 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즉 PREA 제정의 입법 취지는 교정기관이 제정한 금지규범에 대한 수용자의 존중을 전제로, 교정기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제제도를 통해 수용자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고, 소송을 남용하거나 악의적으로 고소·고발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으려 하거나, 민사소송을 남용하는 등을 제한하려는 데 있다. 특히 수용자가 승소할 경우 그 소송 비용 전액을 피고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금전보상을 염두에 둔 민사소송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소송 등을 남용하는 수용자에게 사전에 관련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PREA에 대해선 미 형사사법계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다(Fenster, A., & Schlanger, M. 2021.; Wise, R. 2021).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자들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권리구제 신청이 교정공무원을 압박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직동기에 영향을 주는 등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제한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PREA에 준하는 가칭 수용자권리구제법의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 2. 가칭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 필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정공무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교정시설이나 의료처우, 가석방 심사 등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요인들로 진정,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수용자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은 수용자의 인권보호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교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신건강을 해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3회에 걸쳐 시행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실태조사나 앞에서 제시한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자살충동 등이 경찰, 소방,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이 선행연구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교정공무원의 지속적인 정신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칭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는 2012년도에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에서 ‘경찰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 근무 강도도 높은 편이어서 경찰의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찰청이 5년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을 조사하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경찰공무원에게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며, 직원 숙소·복지시설 및 퇴직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못지않게 직무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실제로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와 실태조사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칭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정신장애진단과 신체질환 등에 대한 의료지원과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교정처우로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이창수, 이용주, & 홍상욱, 2021).

## 3.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수용자의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의 일정한 사유가 과밀수용과 화장실 사용, 운동장 공간 활용 등 일상활동에서의 기본권 침해를 그 사유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최근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본부에 권고한 사례 중 과밀수용 문제 해결, 구치소 수용자들에 대한 운동시간 확대 등은 특정한 교정공무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교정본부 나아가 법무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진정03050.2진정04020(병합), 2023. 2. 16. 의결).

더구나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경우,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밀수용 행위가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이러한 판결은 과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될 수 있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행정소송 등의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특히 과밀수용을 해결할 수 있는 교정시설의 증설이 시급하다.

## 4. 수용자 고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의 개선

WHO는 의료적 관점에서 회원국에게 노인수용자 및 만성질환자처우의 가이드라인(The older prisoner and complex chronic medical care)을 제시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165-169). 이 가이드라인은 노인수용자의 연령을 50세부터 55세 정도가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21년을 기준으로 교정시설의 50세 이상 노인 수형자는 40.9%에 달한다(교정본부, 2022: 64). 이는 점차 노인 수형자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고, 전체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교정시설 수용자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허경미, 2017).

수용자의 고령화는 생애주기형 노인증후군<sup>5)</sup>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중증질환, 기억력 감퇴, 자연스럽게 못한 신체활동, 우울감, 분노 등 다양한 증세를 보인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교정처우 매뉴얼은 노인수용자에게는 적합하지 않게 되며, 수용자들에게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여 교정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교정공무원과의 갈등을 부추긴다. 나아가 다양한 권리구제 신청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정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처우프로그램의 개발과 신체운동과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수용자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수용자의 만성질환 혹은 중증질환의 증가와 관련하여 의료적 처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비가 필요하다(허경미, 2019).

## 5. 고충처리 사례집 작성 및 배포

수용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행정심판 신청 등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청구나 신청 등이 각하 또는 기각 등으로 대부분 사실상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권리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수용자들이 그들에게 보장되는 인권의 개념이나 그 범위,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침해라고 인정되는 법적 영역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야기되는 현상일 수 있다. 즉 수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고소나 고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실체를 밝히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하려는 심리도 작용한다(Wogen, & Restrepo, 2020).

따라서 수용자 권리구제의 상당 요인을 차지하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사이의 갈등, 중증질환 의료처우에 대한 불만 등은 교도소장이나 담당 교도관의 재량으로 즉각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수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권리구제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집에는 권리구제의 다양한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수용자의 권리구제 신청을 통하여 개선된 부분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각하, 기각된 내용, 취하된 내용건 등을 요약하여 핸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수용자 거실마다 비치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5) WHO는 노인증후군(geriatric syndromes)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화증세를 보이는 현상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환경, 위생, 섭생 등의 여건이 일반인들 보다 열악하여 고령화가 일찍 진행되며, 따라서 노인증후군도 더 빨리 나타난다고 지적한다(WHO, 2014: 165).

## V. 나아가며

교정공무원의 주요 업무는 수용자들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준법정신을 가진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정처우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는 수용자의 성행을 바로잡고 재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공고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정공무원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드는 상당한 장애요인들이 있다. 수용자와의 갈등과 교정공무원에 대한 냉소적인 평가, 과중한 직무부담 등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이직동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점은 이미 법무부의 실태조사나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다. 더 나아가 교정공무원의 적극 교정처우를 어렵게 하는 장애는 수용자의 인권과 맞물려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들이 교정공무원의 적극 교정처우를 가로막는 장애가 아니라 반대로 지원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용자권리구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절차, 제한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칭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격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한다. 셋째, 교정시설의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과밀수용으로 인한 다양한 불만과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 고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급격한 수용자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노인증후군을 보여 기존의 교정처우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작성하여 수용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각종 권리구제를 줄일 수 있게 하여 교정공무원들이 좀 더 교정처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교정본부, (2022). 교정통계연보.
- 김경태, (2019). 교정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4(3), 61-80.
- 김광수, (2014). 미국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법적 권리에서 사실상의 손상 (injury in fact)으로. 행정법연구, (39), 89-113.
- 김광훈/박종익/이수정/장광호, (2017). 교정시설 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 신경정신의학, 56(1), 20-27.
- 김금자/도광조, (2020). 교정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65, 1-33.
- 김남철, (2012).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외의 조화방안: 특히 이의신청절차와 행정심판과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3(4), 105-134.
- 김도우/임기택, (2020). 교정시설의 클러스터화 (Clusterization)를 통한 수용환경 개선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정학회보, 29(5), 1-24.
- 김묘연/김형빈, (2023).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 (PTSD)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 지방정부연구, 26(4), 211-233.
- 남재성, (2015). 교정분야 공무원의 직무상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3), 45-86.
- 박근영/서광보, (2019). 교정직공무원의 심리적 안녕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교정상담학연구, 4(1), 51-72.
- 박정수/진중순, (2016).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3(3), 183-200.
- 박은주/백진, (2018). 주민편의시설 수용을 통한 교정시설 입지 갈등 해결에 관한 연구: 서울남부교정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9(6), 53-64.
- 법무부, (2019). 2018년도 법무부 성과관리계획 추진결과 요약, 2019.
- 법무부, (2019). 2019년도 법무부 성과관리계획, 2019.
- 법무부, (2020). 2020-2024년도 법무부 성과관리계획, 2019.
- 법무부, (2022). 2022년도 법무부 성과관리시행계획, 2022.
- 안지선/진중순, (2022).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내용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6(2), 235-256.
- 양점미/문승연, (2016). 교정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과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1), 99-131.

- 이용주/조은철/이준신, (2019).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분석 및 예방과 관리방안. 교정상담학연구, 4(1), 91-107.
- 이창수/이용주/홍상욱, (2021).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건강복지제도 비교. 교정상담학연구, 6, 5-20.
- 허경미, (2017). 노인수용자의 처우 관련 현행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2(4), 59-85.
- 허경미, (2019). 국제인권법상 수용자 의료처우 준칙 및 형집행법령 개정방향. 교정연구, 29(4), 3-35.
- 허용훈/문유석, (2021).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이 경찰관의 적극적 경찰활동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5(2), 179-206.

#### [국외 문헌]

-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2021). JAilhouse Lawyers Handbook. The National Lawyers Guild.
- Fenster, A., & Schlanger, M.. (2021). Slamming the Courthouse Door: 25 years of evidence for repealing the Prison Litigation Reform Act.
- Wise, R. (2021). Five Proposals to Reduce Taxation of Judicial Resources and Expedite Justice in Pro Se Prisoner Civil Rights Litigation. U. Tol. L. Rev., 52, 671.
- Wogen, J., & Restrepo, M. T. (2020). Human rights, stigma, and substance use. Health and Human Rights, 22(1), 51.

#### [기타 자료]

- 뉴시스, 교정공무원 10명 중 4명 정신건강 “적신히”...대책 시급, 2022. 10. 4.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04\\_0002035549#\\_PA/](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04_0002035549#_PA/)
- 마인드포스트, 교정공무원 사망자 중 38%가 극단 선택...수용자에 폭행당하는 경우도 1.4배 증가, 2022. 10. 4.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7653/>
- 혁신24, <https://www.innovation.go.kr/>

# 사람을 읽어야 범죄 예방이 보인다



김도영

인천구치소 보안과 교사

## 교정(矯正), 뒤틀린 마음과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고 인간 내면에 접근한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범죄와 범죄인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강단에 섰다.

“범죄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또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이나 판사요. 아니면 프로파일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범죄 심리학자들이 범죄인과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다. 최근 예능과 시사 프로그램에서 범죄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어때요?”

학생들의 대답이 끝나고 나서 잠시 적막이 생기자 나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언급했다.

“교도관은 범죄인의 심리를 다룬다기보다는 못 도망가게 지키는 사람들 아닌가요?”

“사실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중간 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대답하자, 그 말을 들은 나머지 학생들이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교도관이 범죄인을 못 도망가게 지키기만 하는 것에 동의하는 끄덕임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긍정의 끄덕임이었다.

교정(矯正)은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사람의 뒤틀린 마음과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매일 연쇄살인, 성폭력, 마약,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과 같은 행위를 한 범죄인과 대화를 한다. 그때마다 얼굴의 윤곽, 눈의 깜빡임,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또한 교도소 현장에서는 범죄인의 심리검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성장 과정에서 가정의 해체 또는 학대, 결핍은 없었는지, 그 경험들이 이상행동을 발현시키는 데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물음 등 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 내면에 대해 접근한다. 이 작업은 프로파일링과 같이 인간 내면에 대한 접근이라는 것에서 그 궤를 같이하지만, 수사기관은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분석인 반면, 교정시설의 ‘다시 내보내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적 해부는 그 맥락이 조금 다를 수 있다.



## 다시 사회로 돌아갈 범죄인의 내면에 대한 치료가 수반되어야

우리 사회는 범죄인을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여 범인을 검거했는지에 대해 집중했다. 그 이후 언론에서는 연일 그 사건에 대해 조명했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하지만 내가 보고 겪은 현실은 조금 달랐다. ‘정의의 실현’이라는 막이 내린 곳에 통곡과 분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무거운 법원의 판결과 반짝이는 언론의 카메라 세례가 지나간 자리에, 여전히 피해자의 고통은 보상받을 길이 없었고 가해자도 자신의 생을 이어가고 있었다.

‘조두순이 우리 사회로 돌아왔다’, ‘김근식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기사들을 접해볼 수 있다. 검거와 법원의 판결로 세상으로부터 지워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온다는 말이다. 사람을 살해했다고 해서 법원은 무조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판결하진 않는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더욱이 그들이 교도소에 있는 시간 동안 세상의 분노를 키운 채로 돌아온다면, 또 누군가는 끔찍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범죄인에 대한 심리적 접근은 죄질, 재범 영향성, 심리검사 등을 통해 분석된 사람들의 인지와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 범죄 예방을 위한 동기 강화 상담, 감정조절 등이 동반된 심리적 부검이 수반된다.



현재 나는 심리학과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상담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곧바로 박사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범죄인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교도소만큼 적합한 공간은 없다. ‘이상심리와 인간에 대한 탐구’, 이 작업은 서류나 문서 위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기에, 이론과 현장의 교집합에서 조금씩 발을 내디뎌 본다.

특히 마약 중독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독심리전문가 과정을 마쳤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 강사로 활동하며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 날로 심각해져 가는 소년범죄 예방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글쓰기, 독서, 미술 등을 동반한 접근방식은 소년범에게 유용하다. 심리치료에 있어서 ‘라포’ 형성은 중요한 기본요소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도구들은 내담자와 친밀감 또는 신뢰 관계를 쌓는 데 효과적이다. 2016년경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소년범에게 100시간의 인문 치료 수강명령을 판결한 적이 있다. 미술, 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 그 과정을 통해 분노 조절 방법 등을 배우는 것은 소년범에게 필요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나 역시 책 출간 작업을 통해 솔직한 내면에 대해 마주할 수 있었고 내 글을 읽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경험을 했다.

인류는 많은 시간 동안 범죄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해왔다. 하지만 검거와 판결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다.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교도소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 다시 사회로 돌아갈 그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12월, 차가운 겨울 공기가 머물다 지나간 교도소의 시간 아래에서, 오늘도 쉽게 답을 내지 못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



박경혜  
법무부 특별점검팀 교감

## I. 서설 - 징벌 실효제도의 의의

## II. 형의 실효제도

## III. 징벌 실효의 요건

## IV. 징벌 실효의 절차 및 효과

## V. 결어 - 징벌 실효 규정의 구체적 적용

## I. 서설 - 징벌 실효제도의 의의

### 1. 수용자 규율과 징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의 목적은 수형자를 교정, 교화하여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구금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형집행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초적 전제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라고 할 것이다. 교정시설은 형벌의 집행 또는 피고인 등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수용하는 장소이므로 시설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교정시설은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또는 피고인·피의자 등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수용자를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로서 강제적인 수용에 따른 집단생활이라는 점에서 교정시설의 시설과 인력의 안전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상 생활에 있어 엄격한 규율이 불가피하다(헌재 2005. 2. 24.자 2003헌마289 결정 등 참조). 이에 형집행법은 ‘제12장 규율과 상벌’이라는 독자적인 장<sup>1)</sup>을 두고 수용자로 하여금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면서(제105조 제1항), 그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을 부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107조).



1) 종래 구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규율과 징벌에 관하여 ‘제10장 분류와 처우’에서 제45조(규율 등), 제46조(징벌), 제47조(징벌위원회), 제48조(징벌집행의 정지, 면제), 제48조의2(징벌집행의 유예)의 5개 조문만을 두고 대부분의 사항을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규율 및 징벌에 관한 상당 부분을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특별권력관계의 관점에서 보아 법무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학계의 비판이 있었다.

## 2. 징벌의 법적 성격

징벌은 형집행법상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이다. 징벌은 행정행위로서 수용자에게 규율의 준수를 유도하는 일반예방의 효과와 징벌을 받은 수용자로 하여금 장차 규율 위반을 자제하도록 하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함께 가지는 행정상 질서벌의 일종이다.

형집행법에 규정된 징벌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금치는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금지시키고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수용자보다 가중된 징벌적 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헌재 2005. 2. 24.자 2003헌마289 결정, 헌재 2004. 12. 16.자 2002헌마478 결정 등 각 참조).

형벌의 종류 중 징역·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와 재산형인 벌금을 선고, 확정되었음에도 완납하지 않아 환형처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집행을 위하여 교도소 등에 수형자로서 구금되고,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되며, 이에 따라 구금된 사람들은 격리된 교정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 다시 말해 수용자라는 지위에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몇몇 기본권은 그 제한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정시설 내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행해지는 규율과 징벌을 통한 수용자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 즉 강제적 수용에 따른 집단생활의 유지 등을 위하여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구금과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으로서 일반적인 수용자의 구금상태보다 가중된 구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3. 징벌 실효제도의 도입

징벌의 부과에 따른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하여 주는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는 징벌을 받은 수용자의 개선과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정정책적 고려에서 형의 실효제도와 같은 취지에서 2004년 구「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전부개정 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시행 2004. 6. 29.] [법무부령 제555호, 2004. 6. 29., 전부개정]

#### 【전문개정】

#### 개정이유

수용자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의 내용 및 규율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율위반행위 조사, 징벌 의결 및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징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마. 징벌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징벌을 받음이 없이 일정 기간을 경과할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는 **징벌실효제도를 도입함**(제26조).

#### 【개정문】

**제26조(징벌의 실효)**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징벌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1. 10일 이상의 금치 또는 3월 이상의 작업상여금 삭감: 2년
2. 10일 미만의 금치 또는 3월 미만의 작업상여금 삭감, 신청에 의한 작업정지: 1년
3. 신문 및 도서 열람의 금지, 경고: 6월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수용자 징벌의 실효는 징벌 처분집행이 완료되거나 면제된 수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규율위반행위 저지르지 않고 교정성적 및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한 경우 등에 있어서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징벌 부과 이력을 제거하여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해 주는 행정적 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형의 실효제도는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사람은 형벌의 집행종료 등으로 형이 소

떨어진 후에도 전과(前科) 사실은 그대로 남아 사회복귀 과정에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전과 사실을 말소하고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이다. 형의 실효는 「형법 제81조」의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실효, 「사면법」 제5조에 의한 실효가 있으며, 형의 실효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은 없으며 여러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의 실효와 같은 취지의 제도로 치료감호의 실효가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 역시 규율을 위반하여 징벌을 받은 수용자의 개선과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제도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 4. 교정관계 법령 체계 재구성 등

1950년 3월 2일, 법률 제105호로 제정된 「행형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오다가 2007년 12월 21일 전부개정을 통하여 법률 제명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전부개정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728호)은 2008. 12. 22.부터 시행되었다.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종전 「행형법 시행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 및 시행령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전부개정)을 개정하였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12. 22.] [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1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2. 가석방심사위원회규정
3.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4. 귀휴시행규칙
5. 귀휴심사위원회규칙
6.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7.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
8. 수용자의류및침구급여에관한규칙
9. 수용자주·부식급여규칙
10. 수형자등교육규칙
1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12. 외국인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

「행형법」과 「행형법시행령」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95호, 2008. 10. 29. 공포, 12. 22. 시행)으로 각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9일 법무부령 제655호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등 12개의 개별 법무부령을 폐지하였다.

교정관계 법령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가 재구성됨에 따라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전면개정 법률 형집행법에서 별도의 장을 두어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규율 및 징벌에 관한 나머지 사항과 및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및 법률·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정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징벌제도 관련 규정체계가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구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서 2004년 개정 시 최초 도입하여 제26조에서 규정하던 수용자 징벌의 실효는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에서 규정하게 되면서 그 내용도 일부 변경되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은 사람의 ‘형의 실효’에 관하여는 개별 판결·결정례

및 판례평석, 학술논문 등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반하여, 수용자 ‘징벌의 실효’의 경우에는 형집행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으로 법률과 시행규칙을 합쳐 단 2개의 조항이 있고, 징벌실효가 문제 된 소송사례가 드물어 법원 판결 수가 적으며,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실무상 징벌실효의 효과가 구체적 사안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해석 등으로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법령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형벌을 받은 사람의 ‘형의 실효제도’를 개관하고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본 후 ‘징벌의 실효제도’를 요건·절차·효과로 나누어 검토, 서술하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결례 등을 소개, 해설하여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II. 형의 실효제도

### 1. 재판상 형의 실효

#### 가. 형의 실효제도의 의미

형의 실효제도는 범죄인의 개선과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형의 실효제도는 i) 재판상 형의 실효(형법 제81조), ii) 법률상 형의 실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iii) 사면에 의한 형의 실효(사면법 제5조)가 있다.<sup>2)</sup>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로서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은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에 대하여도 그 전과 사실을 근거로 계속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사회 복귀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범죄로 인한 형벌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에도 전과 사실은 그대로 남아 전과자라는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형 선고의 법률상 효과로 인하여 여러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형법상 누범가중 사유, 선고유예·집행유예 결격 사유, 공무원 임용 제한 사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형의 실효와 같은 취지의 제도인 치료감호의 실효제도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치료감호를 선고한 재판의 효과를 i) 재판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재판상 치료감호의 실효(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와 ii)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상 치료감호의 실효(같은조 제2항)가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되고, 이는 해당 전과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형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형법은 집행유예의 효과(제65조), 형의 시효(제77조) 등 형식적 형벌집행권의 소멸요건과 별개로 형벌을 받은 자가 재범하지 않는 경우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에 따른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형의 실효제도를 두고 있다.

#### 나. 형법 제81조 형의 실효

형법은 형의 실효제도 세 가지 유형 중 ‘재판상 형의 실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81조).

재판상 형의 실효의 대상은 징역형과 금고형에 한하므로 징역형인 이상 무기징역도 포함되나 사형이나 벌금, 구류 등은 그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법 제76조에 따라 형 집행 중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자에 한하므로 형의 집행 중인 자는 제외된다.

중단 사유 없이, 즉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됨이 없이 7년을 무사히 경과하여야 한다. 형의 실효제도의 본질이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을 평가하여 과거의 전과 사실로부터 단절시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실효기간 7년 내에 재범하여 벌금형 등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실효기간이 중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중단 사유가 된 벌금형 등 나중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다시 7년을 무사히 경과하는 등 형법 제8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이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피해자는 법률상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도 포함한다고 본다. 또한 절도죄의 장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의 손해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과거에 받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으로써 범죄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형의 실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신청권자는 형의 선고를 받은 본인 또는 검사이다. 신청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성질에 비추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신청서에는 실효를 구하는 형을 특정하고, 신청인,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참조).

형의 실효 신청에 대한 선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37조 제2항). 관할 법원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의 실효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의 해당 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형의 실효가 선고되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누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 형의 선고로 인하여 공무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그 형의 실효에 의하여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소멸한다는 것은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과거의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형의 실효의 효과와 관련하여 ‘형의 선고에 기한 법률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것일 뿐 실효의 효력이 그 형 선고 시로 소급하지 않으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개별적인 경우<sup>3)</sup>에 있어서 형의 실효 효과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을 형의 실효제도의 취지 관점에서 보면 형의 실효의 법률상 효과를 통해서 형의 실효제도의 본질적 취지의 일부를 고려하는 듯하지만 형이 실효되더라도 남아있는 사실상 효과로 인해서 여전히 ‘기왕에 낙인이 찍힌’ 전과자에 대한 사회 복귀를 방해하는 형의 실효제도의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4)</sup>는 평가 등 학계의 많은 비판이 있다.

결국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형 선고에 기한 사실상의 효과는 그대로 남는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

3) 실효된 형이 ①징역인 경우 상습절도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가중처벌 요건으로서의 징역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특정강력범죄인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집행유예 결정 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④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여 선고유예 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⑤형이 실효된 사람이 그 후 다른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 실효된 형을 양형자료 또는 상습성 인정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4) 류전철, 형의 실효의 법률상 효과와 사실상 효과, 법학논총 제33집 제3호, 2013년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 중 일부인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만 말소하고 범죄경력자료는 말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8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형의 실효 효과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의 '일부'만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즉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이 실효된 후에도 전과 사실은 그대로 남아 사회복귀 과정에서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재범하지 않은 범죄인의 전과 사실을 제거하고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한다는 형의 실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 2. 법률상 형의 실효

법률상 형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을 받은 자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이 법률상 당연히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그 형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형이 실효되는 재판상 형의 실효나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의 효과로서 형이 실효되는 일반사면과 구별된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 1980. 12. 18.] [법률 제3281호, 1980. 12. 18., 제정]

#### 【제정이유】

#### 【신규제정】

매년 누증되고 있는 전과자 중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고 산발적인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①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 및 수사자료표로 구분하고 그 관리청을 정함.
- ② 수사자료표는 원칙적으로 범죄수사와 재판에만 활용하도록 함.
- ③ 수형인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벌금은 3년, 구류·과료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이 실효하도록 함.
- ④ 전과기록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손상·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내용을 변작 또는 허위 기재한 자 및 전과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정함. 수용자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의 내용 및 규율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율위반행위 조사, 징벌의결 및 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징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재판상 형의 실효의 요건을 완화하여 전과자의 개선과 사회 복귀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형이 실효되는 제도가 요청됨에 따라 1980년 12월 18일 제정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법률상 형의 실효제도를 도입하고 전과기록의 관리를 체계화하였다.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 2023. 7. 6.] [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상 형의 실효의 대상이 되는 형은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벌금, 구류, 과료도 실효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형의 실효의 대상이 되는 형이 징역, 금고에 한하는 재판상 형의 실효의 경우와 다르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한다. 중단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야 하는 것은 재판상 형의 실효의 경우와 같으나, 피해자의 손해보상은 요건이 아니다.

재판상 형의 실효의 실효기간은 7년임에 반하여 법률상 형의 실효의 실효기간은 형의 종류와 정도와 따라 다르다. 징역, 금고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형이면 5년, 벌금은 2년이고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즉시 실효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조 본문 및 단서). 그리고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실효기간으로 하며, 실효기간 계산 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면 법률상 당연히 형이 실효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므로 형의 실효신청이나 형의 실효선고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

형의 실효의 효과는 재판상 형의 실효의 경우와 동일하다. 즉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

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형이 실효되어도 남아 있는 사실상 효과로 인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의 ‘일부’만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결과 형의 실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도 같다. 한편, 법률상 형의 실효에 있어서 실효되는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40, 83감도33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법리보다는 재판상 형의 실효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전과자 중 재범하지 않는 사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하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를 우선시한 판단으로 이해된다.

### 3. 사면에 의한 형의 실효

사면에 의한 형의 실효라 함은 사면법 제5조에 따른 사면의 효과로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 의한 형의 실효는 대통령이 실시하는 사면의 효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형 실효선고에 의해서 형이 실효되는 재판상 형의 실효나 법률에 규정된 일정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는 일반사면과 구별된다.

사면은 행정권에 의하여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그 효과를 감쇄하는 제도이다. 사면제도의 취지는 법률의 확실성이 가져오는 폐해를 회피하고, 형 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유지함으로써 범죄자의 개선·사회복귀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sup>5)</sup>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 행사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사법작용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면법은 사면 상신의 신청, 사면의 제청 및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5) 김병은, 일반사면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소고,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1권, 형사실무연구회, 박영사, 1997년, 441-455면

### 사면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既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일반사면과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사면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면제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대법원은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242 판결).

사면법은 사면 등으로 인하여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면의 효과로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에 소급효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사면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는 재판상 형의 실효 및 법률상 형의 실효의 경우와 동일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즉 일반사면이 실시되거나 특별사면 실시 후 별도의 처분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 【판시사항】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이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그 각 호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그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취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Ⅲ. 징벌 실효의 요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2004년 6월 29일 전부개정 시 징벌처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용자 징벌 실효제도를 처음 규정하였다.

징벌 실효는 다시 징벌을 받지 않고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가 징벌처분 이력으로 가석방 등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갱생 의욕을 고취하고 자 하는 교정정책적 고려에서 형의 실효제도와 같은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수용자 본인의 신청 또는 소장 직권으로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형의 실효제도 유형 중 재판상 형의 실효와 사면에 의한 형의 선고의 효력 상실을 혼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2007년 12월 21일 형집행법 전부개정 및 이에 맞추어 전반적인 교정관계 법령 체계를 재구성하면서, 구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하던 징벌의 실효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 전부개정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징벌의 종류·기간에 따른 실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 2008. 12. 19. 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 체계를 변경하였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집행법 제115조에서 규정한 징벌의 실효는 종전과 달리 수용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징벌실효를 없애고, 징벌실효기간 경과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수용자의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1.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의 징벌 실효

##### 가. 징벌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부과받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집행법 제1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징벌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징벌을 받음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그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나. 교정성적이 양호

징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다시 규율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한 수용자라야 한다. 교정성적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상벌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이다(형집행법 제5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다. 중단사유 없는 실효기간의 경과

징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다시 징벌을 부과받음이 없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징벌 실효기간을 경과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징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그 징벌 실효기간을 경과하여야 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제234조(징벌의 실효) ① 법 제115조 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1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지: 2년 6개월
-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지: 2년
-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지: 1년 6개월
- 라. 9일 이하의 금지: 1년
- 2. 제21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 외의 징벌: 2년
- 3. 제215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 외의 징벌: 1년 6개월
- 4. 제215조 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외의 징벌: 1년
- 5. 제215조 제5호에 해당하는 징벌: 6개월
- ② 소장은 법 제11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실효기간 이 지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징벌실효기간의 중단사유 없이, 즉 다시 징벌을 받음이 없이 징벌실효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비단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이라는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의 문언 때문만이 아니라 실효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징벌의 집행을 마친 수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규율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을 평가하여 과거의 징벌이력을 제거하여 향후 가석방 등 각종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징벌의 실효제도가기 때문이다.<sup>6)</sup>

수용자 징벌의 실효의 징벌실효기간은 징벌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sup>7)</sup> 금지의 경우 21일 이상 30일 이하이면 2년 6개월, 16일 이상 20일 이하이면 2년, 10일 이상 15일 이하이면 1년 6개월, 9일 이하이면 1년, 경고의 경우에는 6개월이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6) 그런데 실무상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 제2항의 내용과 의미를 잘못 인식하는 등으로 징벌 집행 종료일로부터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벌실효기간을 경과하지만 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징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7) 이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형의 실효기간을 다르게 정한 법률상 형의 실효와 유사하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조 참조).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30일을 초과하는 금지의 경우에는 징벌실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권법률인 형집행법은 징벌실효의 “기간”과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징벌실효의 대상이 되는 징벌의 정도에 관하여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형집행법은 징벌 실효의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30일을 초과하는 금지라는 이유만으로 징벌 실효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교정정책적인 고려에서 과거의 징벌이력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징벌을 받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징벌 실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소장은 30일을 초과하는 금치를 부과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수용자가 상당한 기간(최대 징벌실효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징벌 실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30일 초과하는 금지에 대하여 징벌 실효 신청을 한 경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준하여 그 징벌실효기간을 2년 6개월로 보고 중단사유 없이 그 실효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징벌 실효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 2. 형집행법 제115조 제2항의 징벌 실효

### 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징벌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종료로 간주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지 못하거나 중단사유 없이 징벌실효기간을 경과하지 못하여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의 징벌 실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면 과거의 징벌이력을 제거시켜 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2007년 12월 21일 형집행법 전부개정 시에 신설되었다.

형벌의 집행 또는 피고인 등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구금되어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는 격리된 교정시설에서 각종 소란, 폭행, 자살·자해 시도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수의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교정현실에서 수용자에 의한 교정사고 발생 방지행위를 유도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해된다.

교정시설 화재, 수용자 도주, 병사, 자살, 수용자간 폭행,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등 다

양한 유형의 교정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단순히 교정사고 방지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정사고 발생을 방지함에 있어 주요한 행위를 하는 등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사·의결

소장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먼저 그 징벌실효 가부에 관하여 분류처우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을 거친 다음에 법무부 장관에게 징벌 실효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IV. 징벌 실효의 절차 및 효과

### 1. 징벌 실효의 승인 신청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①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벌실효 필요성에 대한 의결을 거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징벌의 실효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권자는 소장이다. 폐지된 구「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은 수용자 본인이 소장에 징벌 실효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형집행법은 소장이 징벌시키기 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을 추가하면서 그 승인 신청권자를 소장으로 한정하고 있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 제2항). 따라서 수용자에게는 승인을 신청할 권리가 없으며, 수용자가 소장에게 징벌 실효 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에 불과하다.

### 2. 법무부 장관의 승인

소장이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효를 구하는 징벌을 특정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은 형집행법령상의 징벌실효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즉 징벌실효기간을 무사히 경과 여부의 형식적 요건, 교정성적이 양호한지 여부의 실질적 요건 및 형집행법 제115조 제2항의 징벌 실효의 경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 등 승인 신청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판단하여 승인 결정을 하고, 위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불승인 결정을 한다.

법무부 장관은 징벌의 실효 승인 신청을 한 소장에게 승인 결정 또는 불승인 결정을 통보한다. 이러한 징벌 실효 승인 통보 또는 불승인 통보는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지 법무부 장관의 징벌 실효 승인 자체가 징벌을 실효시키는 행정처분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5. 10. 선고 2018구합6362 판결 참조).

즉 현행 징벌의 실효제도는 수용자의 교정성적 양호 등 징벌 실효의 필요에 관한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징벌의 실효를 1차적으로 결정한 후 징벌실효기간 경과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징벌의 실효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그 징벌의 실효시키는 행정조치를 하는 구조이다.

#### 서울행정법원 2019. 5. 10. 선고 2018구합6362 판결: 확정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은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용자의 징벌실효는 이 사건 피고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하는 것이고, 위 법률 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승인 내지 불승인은 수용자가 아니라 교도소장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징벌실효 불승인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원고(○○구치소 수용자)가 피고(법무부 장관)의 징벌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심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각하 판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2019누47270 판결), 상고기간 도과로 2019. 12. 4. 판결 확정됨.

### 3. 장래에 향하여 징벌이력 소멸

소장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벌실효 신청에 대한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그 징벌을 실효시킨다. 징벌을 실효시킨 이후에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 제3항). 그러므로 징벌이 실효된 이후에는 징벌 부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이 해소되므로 과거의 징벌처분 이력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7조(처우) ① 수형자는 제59조의 분류심사의 결과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되며, 개별처우계획에 따라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는다.

제59조(분류심사) ① 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분류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재심사: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
2. 부정기재심사: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

#### 제69조(분류조사 사항)

② 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벌이 실효되면 그때 비로소 징벌이력이 소멸된다. 소장이 형집행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징벌을 실효시켜 주기 전까지는 징벌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이후에도 그러한 징벌처분 이력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가 그 징벌처분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았더라도 이후 정기재심사(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호) 과정에서 그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징벌처분의 존재에 따라 분류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추후 가석방 심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 즉 이미 징벌집행이 완료되어 그 효과가 소멸된 징벌처분이더라도 실효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즉 징벌이력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부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1191 판결: 확정

형법 제72조 제1항 및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선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가석방업무지침(법무부예규)에 의하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시에는 수용생활 중 일체의 상벌자료,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중략) 원고가 이 사건 징벌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차 있을지 모르는 가석방 심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는 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와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처분에 대한 엄격한 사법심사의 필요성 등 ... (중략)...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현재 형 집행 중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징벌 처분의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구치소 수용자)가 피고(△△구치소장)를 상대로 각 징벌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징벌처분은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현재 형 집행 중인 원고로서는 각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더라도 징벌이력은 실효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가석방 시 불이익 등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각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판단을 한 사례임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가 그 징벌처분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 받았더라도 이후 정기재심사(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5조 제2호) 과정에서 그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징벌처분의 존재에 따라 분류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추후 가석방 심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다. 즉 이미 징벌집행이 완료되어 그 효과가 소멸된 징벌처분이더라도 실효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징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즉 징벌이력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V. 결어 - 징벌 실효 규정의 구체적 적용

징벌의 실효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소장이 부과한 행정처분인 징벌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징벌처분의 이력을 제거하여 주는 것 외에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징벌이 실효되거나 법률에서 규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징벌이 실효되는 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의 실효의 유형을 정해야 한다면 ‘행정적 조치에 의한 징벌의 실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형의 실효제도는 재판상 형의 실효(형법 제81조), 법률상 형의 실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면에 의한 형의 실효(사면법 제5조)의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치료감호의 실효제도는 재판상 치료감호의 실효(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와 법률상 치료감호의 실효(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로 두 가지 유형이 있음에 반하여, 징벌의 실효제도는 한 가지 유형이 있다.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는 2004년에 처음 도입되어 그 운영의 역사가 짧고, 또 징벌

의 실효가 쟁점이 된 소송사례 자체가 드물어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은 판결례 자체가 드물고, 또 징벌 실효에 관하여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소송당사자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등으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없다. 지금까지 요건·절차·효과로 나누어 검토하여 서술한 징벌의 실효제도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이 잘 나타난 리딩케이스 판결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대구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구합2616 판결: 확정

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된 수용자의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경고’의 징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고,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줄 수 없는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 제3항), 법무부 장관이 2015. 4. 29.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실효신청을 승인하여 이 사건 징벌처분이 실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교도소장은 이 사건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을 새로운 징벌부과시 고려하거나, 이 사건 징벌처분을 원고의 교정성적(수형자의 처우, 귀휴, 가석방 심사에서 고려됨)에 반영하는 등 이 사건 징벌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불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원고(□□교도소 수용자)가 피고(□□교도소장)가 원고에게 2014. 6. 13. 행한 ‘경고에 처한다’는 징벌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①이 사건 징벌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하여 원고가 향후 가석방 대상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②원고는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서 교도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징벌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여 소각하 판결을 한 사례임



관련 문제로, 실무상 징벌이 실효되는 경우 그 효과 관련하여 과거 2번 이상 다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가 다시 징벌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벌실효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그 마지막 징벌 이전에 받은 징벌도 모두 징벌실효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일거에 징벌이력 모두를 제거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징벌이 실효되는 경우 그 소멸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주로 어느 수용자가 과거에는 상습적으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으로 수차례 징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징벌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등 문제수의 개선을 위하여 과거 징벌이력 전체를 없애주자는 것이다.

생각건대, 징벌의 실효제도의 경우 여타의 실효제도와 달리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한 가지 유형만 있고, 현행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는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 점에서는 재판상 형의 실효와 유사하고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한 행정적 조치로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도록 한 점에서는 사면에 의한 형의 실효와 유사한 형태인데, 법률상 형의 실효의 경우 외에 다른 유형의 형의 실효에서는 마지막 형의 실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된다는 취지의 판결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과거 2번 이상 다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가 다시 징벌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벌실효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과거 징벌이력 전체를 일거에 소멸시킬 수는 없고 각 징벌이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sup>8)</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보면, 소장이 형집행법 제11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 규정에 따라 징벌을 실효시키면 실효된 그 징벌이력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 즉 규율위반행위로 징벌을 부과받은 수용자의 징벌이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되면 그 징벌처분은 그 집행종료·면제 시에 효과가 소멸된 행정처분이고, 이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아 소장이 징벌을 실효시키면 그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징벌처분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형 선고에 기한 사실상의 효과는 그대로 남는다는 대법원의 입장과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만 말소하도록 규정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형

8) 징벌 실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징벌 실효에 관한 규정을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의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 없고, 징벌 집행 종료 후 짧은 기간에 다시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재차 징벌을 받는 것을 수회 반복해온 수용자의 징벌이력을 일거에 모두 소멸시켜 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것을 평가하여 과거의 전과사실로부터 단절시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실효제도 본질에 반한다.

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의 일부만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형의 실효제도와 달리 실제에 있어서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하는 수용자의 징벌이력을 제거하여 각종 처우 및 가석방심사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한다는 징벌 실효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징벌 실효의 효과가 작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먼저 ‘형의 실효제도’를 개관하고, 그 유형별로 각 법률 규정, 관련 판례, 학계의 비판 등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를 형의 실효제도와 비교 서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형집행법상 수용자 징벌의 실효제도를 정리해보았다.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이 실효된 후에도 전과사실은 그대로 남아 사회복귀 과정에서 제약이 생기는 것과 달리 징벌을 받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그 징벌이 실효된 후에는 징벌부과 이력이 소멸되어 가석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용자 징벌의 실효는 독자적인 제도적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글을 끝마치고자 한다.



# UN의 최소기준규칙과 미결수 인권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ngsley 판결의 고찰<sup>1)</sup>



강선경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저자

- I. 서론
- II. UN의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
- III. 1983조 소송
- IV.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 사례
- V.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 판결
- VI.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
- VII. 결론

1)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7S1A5B805747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국문 요약

이 연구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급증한 마약 중독 등 마약사범으로 인한 교도소의 과밀수감과 각종 수감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42 U.S.C.§1983에 근거해 교도관의 미결수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에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어 교정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ingsley vs Hendrickson 사건'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비록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 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제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킹슬리 판결을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적용하여 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마약중독, 최소기준규칙, 민권법 제1983조 소송, 미결수, 과도한 물리력, 고의적인 무관심, 무모한 행동, 악의적이고 가학적인 해악,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제적인 법의 적정절차**

## I. 서론

무죄추정에 대하여 「국제인권규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혐의를 받은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하여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sup>2)</sup> 또한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감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sup>3)</sup> 2019년 1월 초에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3명이 미결수 한 명을 가둬놓고 집단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대전지방경찰청이 수감자를 집단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전 교도소 교도관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과거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엄한 처벌로 인하여 미국 교도소 총 수감 인원 중에서 마약사범이 60%에 가까운 정도로서 미국에서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렇듯 수감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밀수감 등 각종의 수감자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민권법 제1983조<sup>5)</sup>에 근거한 미결수의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동임, 천정환, (2019), 교정학개론(개정판), 도서출판 진영사, 157쪽.

3) 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4) 김한균,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4쪽.

5) Civil Rights Act of 1964, §1983, 42 U.S.C. §1983.

## II. UN의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 (Standard Minimum Rule)

### 1. UN의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

1948년 UN총회는 세계인권선언(UDHR)을 의결하였다.<sup>6)</sup>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 및 안전을 증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고문 금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나 처벌 금지,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사후입법(ex post facto laws)에 의한 처벌 금지 등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권리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sup>7)</sup>에서 공고화되었다. UN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한 인권과 사회적 목표들을 증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과 형사사법 행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UN이 제정하였으며, UN의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이 운영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 UN은 각 국가가 범죄행위 없이 해당 국가 내에서 국민이 신체와 재산상의 안전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 효율적인 형사사법 제도의 운영 의무가 각 국가들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인 인도적인 형사사법 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1955년에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1회 UN의회에서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SMR’)의 채택이었다.<sup>8)</sup> 이 SMR은 ECOSOC에 의해 1957년에 승인되었다. 하지만 이 승인은 SMR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의도한 것이 아니며, 수형자들의 처우와 수감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원칙과 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이었다. SMR의 전반적인 목표는 공공안전과 수감시설 보안 목표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인권선언의

6)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A. Res. 217A, U.N. GAOR, 3d Sess., 1st plen. mtg., U.N. Doc. A/810 (Dec. 12, 1948), available at <http://www.un.org/Overview/rights.html>.

7)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B규약 또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부른다.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Dec. 19, 1966, S. EXEC. DOC. E, 95-2, 999 U.N.T.S. 171 (1976년 3월 26일에 발효됨), available at <http://www.ohchr.org/english/law/ccpr.htm> (1992년 6월 8일에 미국이 이 조약을 비준하였음).

8)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dopted Aug. 30, 1955 by the First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E.S.C. Res. 663C, Annex 1, at 11, U.N. ESCOR, 24th Sess., Supp. No. 1, U.N. Doc., amended by E.S.C. Res. 2076, at 35, U.N. ESCOR, 32nd Sess., Supp. No. 1, U.N. Doc. E/5988 (May 13, 1977), available at <http://www.ohchr.org/english/law/treatmentprisoners.htm>.

인도적인 정신을 교정시스템에 주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SMR은 인도적인 처우와 갱생을 강조하였으며, 구금의 유일한 정당성은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하였을 때 법을 지키고 자조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욕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MR은 감옥과 교도시설 행정관들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기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수형자 등록, 입소, 수형자 분류, 숙박 수용, 개인적 위생, 옷과 침구, 식량, 운동, 의료서비스, 외부세계와의 소통, 책의 사용, 종교 서비스, 강제력 행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SMR은 감옥개혁, 특히 수형자들의 건강, 존엄 및 갱생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sup>9)</sup> UN은 회원국들이 인권을 증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정의의 공정한 수행을 증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SMR을 회원국들이 실행하는 절차는 대체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 2. 최소기준규칙의 실행절차

UN의회에서 SMR을 채택한 규정들에는 SMR의 실행에 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국제적 규범을 회원국들의 국내법과 관행으로 편입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과 둘째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편입하는 여부를 감독하는 메커니즘이다. 반면, SMR을 집행하거나 회원국들의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sup>10)</sup> ECOSOC는 1957년에 SMR을 승인한 후에 회원국들에 SMR의 집행을 위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설문지들을 회원국들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미미하였다. 1967년까지 UN에 가입한 123개 회원국 중에서 44개국만이 설문지에 답변하였다. 회원국들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인하여 UN총회는 1970년대에 추가로 2개의 의결을 하였으며 회원국들이 SMR을 자신들의 국내 형법 조항에 편입시킬 것을 요청하였다.<sup>11)</sup>

9)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First United Nations Congress 가 범죄예방과 범법자의 처우에 관하여 1955년 8월 30일에 채택하였음, E.S.C. Res. 663C, Annex 1, at 11, U.N. ESCOR, 24th Sess., Supp. No. 1, U.N. Doc. A/CONF/611 (1957년 7월 31일), amended by E.S.C. Res. 2076, at 35, U.N. ESCOR, 32nd Sess., Supp. No. 1, U.N. Doc. E/5988 (May 13, 1977), <http://www.ohchr.org/english/law/treatmentprisoners.htm>.

10) Roger S. Clark, Th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 Formulation of Standards and Efforts at their Implementation 11-12, 98(1994); Sara A. Rodriguez, The Impotence of Being Earnest: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Vol. 33, pp. 61-79(2007).

11) Daniel L. Skoler, World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reatment of Prisoners, 10 J. INT'L L. & ECON. 453(1975).

다시 1984년에 이르러 ECOSOC는 수형자 처우를 위한 SMR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승인하였다.<sup>12)</sup> 더 나아가, 형사사법의 인간화와 인권보호를 위해서 UN은 1990년에 수형자들의 처우를 위한 기본적 원칙들이 포함된 결의사항을 통과시켰다.<sup>13)</sup>

## 3. 미국에서의 SMR의 지위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SMR을 정식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sup>14)</sup> 그렇지만 미국 수감시설 시스템이 '구금 상태에 관한 표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수감시설 기준의 많은 부분은 1955년에 채택된 SMR의 기준들보다 이전에 확립된 것이다. 미국교정협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는 1946년에 주 정부교정시설의 바람직한 기준의 매뉴얼을 출판하였다. 이후 미국교정협회는 1954년, 1959년 그리고 1966년에 수정된 교정시설 기준의 매뉴얼을 계속하여 출판하였다. SMR의 원칙들은 형사사법 기준에 관한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이 1973년에 개발한 교정시설 기준과 1962년에 모델형 법전(Model Penal Code)에 포함된 기준들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 법원들은 SMR을 지침 목적으로 사용하며, 실제로 SMR을 언급하기보다는 SMR을 국제적 관습법의 하나로 보거나 미국 헌법 수정 8조 분석에서 활용하며, 허용되는 주 교도소 관행에 대한 정보제공 용도로 활용한다. 미국 교정협회와 미국변호사협회가 공표한 기준들과 수감자들의 헌법상 권리들을 확대하는 법원판결들을 검토해보면 SMR에 포함되어있는 주요 조항들의 상당 부분들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1964년에는 드디어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었다.<sup>15)</sup> 이 법의 제정으로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한 미국 법원의 불간섭(hands-off) 태도가 바뀌어서, 교정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헌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정시설 운영자들은 연방 헌법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과 관행을 따르는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2)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Procedur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E.S.C. Res. 1984/47, at 29, U.N. ESCOR, 76th Sess., Supp. No. 1, U.N. Doc. E/1984/84(May 25, 1984).

13) Rodriguez, 79쪽 참조.

14) Skoler, 462-463쪽 참조;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미네소타와 일리노이주만이 SMR를 채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15) 42 U.S.C. §1983(1964).

### III. 민권법 제1983조 소송

#### 1. 미국 수감자들의 인권보호 메커니즘

미국 헌법에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많은 조항들로 이루어진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 헌법 「미국 헌법 수정 제8조」는 잔혹하고 예외적인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제8조는 범죄행위의 가벌성에 비례하지 않는 형벌은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이라고 본다. 잔혹하고 예외적인 형벌 금지는 수감시설의 상태와 수감자들의 처우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법원은 교도소 운영에 있어서 교도소 당국자들에게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해주면서 불간섭 태도를 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법원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사법부가 사소한 일까지 관리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일 때문이었다. 그러나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고 이 법이 미국 연방법전에 제1983조(42 U.S.C. §1983)로 편입된 후에는 교도소 관리들이 법의 탈을 쓰고 자행한 위헌행위를 연방법원에의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수형자들의 소송이 증가하게 되었다. 법원의 불간섭 태도가 사라지고, 수형자들의 인권보호의식이 강화되면서 미국 내 수형시설 시스템을 변환시키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주 정부 운영 교도소 시스템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법원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었다. 1993년까지 4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가 수형자들의 인권침해 소송결과 법원의 감독을 일정 한도 받게 되었다. 주 정부 의회에서의 증가한 예산지출을 통해 주 정부 형벌 시스템을 연방헌법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면서 민권 혁명으로 인하여 미국의 수형시설의 상태는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다. 이러한 개선 여부는 해당 수형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정부의 조직이 표준의 적절한 갱신과 수형시설의 점검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감독받고 있다.



#### 2. 미국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의 동향

법과 교정시설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교정시설 교도관들과 수감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민권법 제1983조」에 근거한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 1978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 교도소 내의 「민권법 제1983조」 위반으로 인한 소송은 매년 40,000건에 달했는데, 1996년에 교도소 소송개혁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 PLRA)이 연방의회에 의하여 통과된 이후에는 2016년까지 평균적으로 38% 감소하였다. 이러한 소송은 긍정적인 교정시설 개혁을 가져온 장점이 있는 반면, 법과 교정시설 정책 집행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에서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2015, 2016, 2017년 최근 3년간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의 주된 원인은 부적절한 의료지원, 과도한 물리력 사용, 상해 등 신체적 손상, 재산상 손실, 수감자들 간의 폭력, 수감자 과잉수감, 자살 예방의 문제, 교도소 내 거주환경, 교도관의 성범죄, 위법한 질서유지 절차, 종교 서비스 이용문제 그리고 수감자 수색에 관한 교도소의 정책에 관한 것들이다. 위법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에는 세부항목으로 수감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물리력의 사용, 테이저건 같은 제압용 도구의 남용, 무기 사용, 에어로졸의 사용, 개의 공격 그리고 치명적인 중상을 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3.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의 요건

수감자들도 일반인들처럼 주 교도소 관리자 등을 상대로 자신의 연방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권리 침해 금지 가처분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42 U.S.C.§1983에 근거하여 제기할 수 있다. 「민권법 제1983조」는 주 또는 지방 교도소 교도관이 주법을 구실로 하여 연방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수감자로 부터 박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법적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6)</sup> “주법을 구실로 하는(under color of state law) 행위”의 요건에는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범법자가 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의 남용, 둘째는 피고가 주 정부의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의 행위에 주 정부 공무원이 관여하였을 것, 셋째는 해당 개인이 주 정부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를 하였을 것이다.

16) Every person, who under color of any statute, ordinance, regulation, custom, or usage of any State or Territory, subjects or causes to be subjected, any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other person within the jurisdiction thereof to the deprivation of any rights, privileges, or immunities secur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shall be liable to the party injured in an action at law, suit in equity, or other proper proceeding for redress. 42 U.S.C. §1983.

한편, 「민권법 제1983조」는 실제적 권리의 원천이 아니며, 미국 연방헌법 등 연방법률상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더구나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수감자는 교도소 소송개혁법(Prison Litigation Reform Act)에 따라서 주 법상 법률 구제 수단과 행정적 법률구제수단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들은 연방법원에서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민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극빈하다는 진술서 및 교정당국의 인증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 면제를 받아서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sup>17)</sup> 한편, 공무원 면책(Qualified Immunity) 법리에 따라서, 합리적 인간이라면 알 수 있는 정도로 명백히 확립된 연방 헌법상의 권리를 주 공무원인 교도관이 침해하지 않은 이상 수감자의 권리 구제소송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주 정부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행위가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초래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sup>18)</sup>



17) 28 U.S.C. §1915 (a) (1) Subject to subsection (b), any court of the United States may authorize the commencement, prosecution or defense of any suit, action or proceeding, civil or criminal, or appeal therein, without prepayment of fees or security therefor, by a person who submits an affidavit that includes a statement of all assets such prisoner possesses that the person is unable to pay such fees or give security therefor. Such affidavit shall state the nature of the action, defense or appeal and affiant's belief that the person is entitled to redress.

18) *Christophel v. Kukulinsky*, 61 F.3d 479, 484 (6th Cir.1995).

## IV.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 사례

교도관들은 교도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한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물리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분류가 가능하다.

### 1. 교도관들이 체벌로 명백하게 보이는 폭력을 가하는 경우

재소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이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2014년 미국 법무부(U.S. Dept. of Justice) 조사 결과, 리커 아일랜드(Rikers Island) 교도소에서 다수 발견되었으며<sup>19)</sup> 마이애미 카운티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의 경미한 반항적 행위(예컨대,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명령에 대해 잘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해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구타하는 등 보복적인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sup>20)</sup> 체벌을 가함으로써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양형과 법적제재를 사법부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보는 판사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또한 체벌은 만연한 정도와 심각한 정도도 문제 시 되고 있다. 더구나 비록 교도관들이 체벌을 가하였다 하여도 수감자들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 2. 체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미한 물리력 행사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교도관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포장하는 경우

재소자를 물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과장하는 것은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처벌을 가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기 위한 방편들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물리력이 재소자가 야기하는 객관적 위험을 넘어서는 정도로 증폭되는 것은 교도관이 재소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거짓을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재소자를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 재소자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며, 합법적인 통제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보다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

19) CRIPA Investigation of NYC Department of Correction Jails on Rikers Island, JC-NY-0062, Civil Rights Litigation Clearinghouse(S.D.N.Y.) <http://www.clearinghouse.net/detail.php?id=14044>.

20) Office of Pub. Affairs, Justice Department Releases Findings of Unconstitutional Conditions at Miami-Dade Jail Facilities, JUSTICE NEWS(Aug. 29, 2011),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releases-findings-unconstituional-conditions-miami-dade-jail-facilities>.

는 것은 외견상 정당화되어 보이더라도 사실상 위법한(de facto) 체벌이 성립한다.<sup>21)</sup> 리커 아일랜드 교도소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결과에 따르면,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이 명백히 통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구타하였으며 이후에는 재소자들이 계속하여 저항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고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 3. 재소자들의 고통이나 상해의 정도에는 무관심하면서 합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도관들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로는 다음의 두 가지 상황을 들 수 있다.

#### 1) 고통을 가해서 명령에 따르게 함

교도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지면서 고통으로 순종시키는 전략은 최근 많이 자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후추 뿌리기 기구(Pepper spray)와 테이저건은 재소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예컨대, 교도관은 재소자를 명령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식기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교도의 보안 교도소 방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수갑을 채우기 위해 재소자의 등 뒤로 손을 모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교도관이 명령하였는데 재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도관은 테이저건을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게 된다. 만약 재소자가 다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이 교도소의 안전에 특별한 위협이 되지 않고 징계권 행사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교도관은 고통을 가해서 순종시키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테이저건에 의해 전기쇼크를 경험한 재소자는 향후에는 종종 명령에 따르게 된다. 또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테이저건을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이 수감자들에게 통할 수 있게도 된다.



21) Margo Schlanger, *The Constitutional Law of Incarceration, Reconfigured*, Cornell Law Review, Vol. 103, pp.357-389 (2018).

#### 2) 부당하게 공격적인 물리력의 사용

앨버스 판결<sup>22)</sup>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악의적이며 가학적인 행위(malicious and sadistical conduct)를 하였는가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조항은 부주의나 실수가 아닌 아집과 무자비함이 존재해야 적용되는 것이라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따라서 교도소 보안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회상해 볼 때, 보안 목적으로 가해진 물리력의 정도가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할 정도라고 보여도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재소자인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폭동 당시 피고인 교도관은 매우 초조하고 화가 나서 인질을 잡고 폭동을 일으킨 재소자들의 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자이던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재소자들이 폭동 진압과정에서의 부상 여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인 교도관은 저놈들을 쏘라고 소리를 지르며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던 재소자들에게도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다. 교도관들은 실제적인 보안 위협인 폭동을 진압하고자 하였지만 이러한 진압이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던 재소자들에게 입힐 부수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철저히 무관심했으며, 결국 방관자인 재소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에 대해 배려를 하지 못했다.

위의 고통을 가해서 명령에 따르게 하거나 부당하게 공격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앨버스 판결에서의 악의적이며 가학적인 행위의 기준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고통을 가해서 명령에 따르게 하는 경우 교도관들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명령에 따르는 것을 유도하려는 것이며, 부당하게 공격적인 물리력을 사용한 때도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통제(control)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통을 가해서 명령에 따르게 하는 경우는 종종 형법 또는 민사법상의 부주의의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sup>23)</sup> 이러한 부주의의 기준은 ①사용된 물리력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며, ②그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 재소자에게 심각한 해악을 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앨버스 판결에서 언급된 부당하게 공격적인 물리력은 형사법적 부주의의 기준을 위반한다고 보기보다는 민사법적 부주의의 기준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앨버스에게 총상을 입힌 교도관은 알려진 위험, 즉 교도소 보안 문제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교도소 내의 주간휴게실에 모여 있던 재소자들 중에 누가 폭동자들이고, 누가 비폭동자들인지에 대해 알아야 함에도 무관심

22) *Whitley v. Albers*, 475 U.S. 312, 315(1986). 재소자인 앨버스는 감옥 내의 폭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교도관들을 돕고 있었는데 교도관들이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앨버스의 다리에 총을 쏘서 부상을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이다.

23) Catherine T. Struve, *The Conditions of Pretrial Detention*, 161 U. PA. L. REV. 1009(2013).

하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미국 헌법상 교도관들의 책임을 현재의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 기준에서 민사법상의 부주의 기준으로 완화된 기준 아래에 판단해야 한다고 미국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sup>24)</sup> 그 근거로는 비록 이러한 교도관들의 행위가 악의적이며 가혹적이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주 정부가 ‘개인 복지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핵심적인 도덕적 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도관의 이러한 행위들은 보안의 정당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며 재소자들 복지의 가치를 배려해주지 못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4) Margo Schlanger, *The Constitutional Law of Incarceration, Reconfigured*, Cornell Law Review, Vol. 103, pp.357-389 (2018).

## V.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킹슬리 판결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수십 년 만에 내렸다.<sup>25)</sup>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의 법의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행사된 물리력은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소송기각신청을 거절하였지만 첫째, 과도한 물리력이란 사건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고 부주의하게 가해진 물리력을 의미하며 둘째, 피고들이 사용했던 물리력이 원고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피고들이 알았음에도 원고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배심원 평결지침(jury instruction)을 공표하였다. 제7연방 항소심 사건에서 킹슬리는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할 것을 요구한 평결지침은 미국 헌법 수정 제8조 상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법적 구제와 법의 적정절차 조항을 부당하게 융합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제7연방 항소심법원은 킹슬리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미결수도 기결수처럼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를 의도적 또는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는 피고인 교도관의 실제적인 고의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sup>26)</sup>

반대 의견에서, 해밀턴(Hamilton) 판사는 미결수에 대하여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판단기준은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처럼 객관적인 합리성 테스트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결수는 석방되기 위해 보석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교도소에 한 달 넘게 구금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으며, 체포되어 재판 전까지 구금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도관들이 미결수를 폭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밀턴 판사는 주장하였다. 5대 4의 결정으로 킹슬리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밀턴 판사의 의견에 동조하였으며 미결수에 대한 적절한 형사책임 기준은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고의적 무관심 테스트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과도

25) *Kingsley v. Hendrickson*, 135 S.Ct. 2466(2015).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킹슬리(Michael Kingsley)는 자신의 침대 위의 전등을 가렸던 종이를 제거하기를 거부하였다고 과도한 물리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킹슬리가 수감에 채워져서 다른 방으로 이동될 때까지 교도관에게 저항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서로 간의 설명이 다르지만, 교도관이 킹슬리의 등에 테이저건을 5초간 쏘았고, 다시 옮겨진 방에서 15분간 수갑을 채워져 있다가 수갑이 제거되었다. 킹슬리가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이유로 증거개시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1983조 소송을 제기하자 교도관들은 소송기각신청을 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제7연방항소법원의 입장을 취하며,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기준을 미결수에게 적용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해악을 가할 악의적이고 가혹적인 의도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6) *Kingsley v. Hendrickson*, 744 F.3d 443, 447(7th Cir. 2014).



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피고들의 주관적인 심적 상태인 부주의한 무관심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지침은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브레이어(Breyer) 대법관은 하급심법원들은 2개의 서로 다른 심적 상태의 문제를 부적절하게 융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심적 상태는 피고들의 물리적 행동에 관한 것으로서 교도관들이 원고를 의도적으로 전기 충격기를 이용하여 제지하고자 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두 번째, 피고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했는지를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피고의 심적 상태로서,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실제적인 법의 적정 절차상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의 경우에 활용되는 객관적인 합리성 기준을 채택하였다.<sup>27)</sup>

이 기준에 따르면 물리력을 행사한 교도관의 주관적인 심적 상태는 관련이 없고, 다만 그 당시 상황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합리적이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결수는 교도관들이 그 상황에서 볼 때 자신을 주관적으로 벌주려고 하거나 자신을 악의적이거나 가학적으로 상해를 가하고자 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기결수에게 적용되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와는 달리, 법의 적정절차 조항은 미결수를 처벌에 상응하는 물리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연방대법원은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비록 교도관들이 처벌하려는 명시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미결수인 원고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교도관의 문제 행위가 합법적인 공적인 목표와 합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도한 행위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원고가 제출함으로써 미결수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sup>28)</sup> 주관적인 고의적 무관심 테스트를 배척하는 근거로서, 교도관들이 이미 받은 구금자들에 대응하는 훈련도 객관적 기준과 합치하며, 피고인인 교도관의 관점 및 그가 가졌던 인식을 대상으로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의 합리성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하므로 물리력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선의로 행동한 교도관을 객관적 기준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가 교도관들이 원고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였던 배심원 평결지침은 물리력의 사용이 그 당시 상황에서 비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외의 추가적인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피고들의 물리력을 사용했던 주관적인 이유들과 물리력의 과도한지 아닌지에 대한 피고들의 주관적인 견해들을 배심원들이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던 배심원

27) Kingsley, 135 S. Ct. at 2472.

28) Kingsley, pp.2472-2474.

평결지침 때문에 항소심 판결은 파기 환송되었다. 파기 환송된 후, 교도관들이 비록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였어도, 행위의 위법성을 결정하는 주관적인 의도가 결여되었다고 배심원들이 평결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배심원 평결지침은 결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법성이 있었다고 제7연방 항소심법원은 판시하였다. 합리적인 교도관이었던 미결수를 벽에 세계 부딪히게 하고 수갑 채운 상태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물리력에서 자유로운 권리인 실제적 법의 적정절차 권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제7연방 항소법원은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실제적인 법의 적정 절차상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들은 미국 헌법 수정 제4조 상에서의 요소들과 동일한 객관적인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그 요소들은 물리력 사용의 필요성과 사용된 물리력의 정도 간의 관계, 원고의 상해 정도, 교도관이 화를 참으려고 노력한 여부나 물리력의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한 여부, 당시의 보안 문제의 심각성 여부, 교도관이 합리적으로 인식했던 미결수의 위협 여부 및 피고인 미결수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였는지의 여부 등이다.<sup>29)</sup>

킹슬리 판결에 따르면,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에 일정한 정도의 권리 행사의 제약이 불가피한 기결수에게 적용되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실제적인 법의 적정 절차원칙에 따라 교도관이나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해당 미결수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금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필요한 의료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29) Kingsley, pp.2473.

## VI.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

미결수가 관련된 향후의 실제적인 법의 적정 절차소송 등에서 주관적인 심적 상태 요건을 배제한 연방대법원의 킹슬리 판결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과도한 물리력 폭력의 경우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지원, 다른 재소자들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는 교도소 내의 구금환경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sup>30)</sup> 이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연방 항소심법원들은 미결수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헌법 수정 제8조가 아니라 제14조의 실제적인 법의 적정절차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sup>31)</sup> 상당수의 법원들이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shocks-the-conscience)”의 법리를 이용하여 교도관들이 해악을 가할 목적만으로 악의적이고 가학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요구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주관적 의도 기준을 미결수에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에서 탈피하여 연방대법원은 킹슬리 판결에서 이제부터는 미결수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권리구제 소송의 경우에는 주관적인 부주의 범죄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합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 이후, 미결수에 대하여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한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는 교도관의 행동이 부주의나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deliberate)이었던가의 첫 번째 이슈에만 관련이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두 번째 이슈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교도관의 의도적 행동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합리적인 교도관의 행동과 합치하는가이다. 한편, 과도한 물리력을 야기한 교도관의 무모한 행동(reckless acts; 부주의한 행동과 의도적 행동의 중간 단계)도 의도적인 행동(deliberate acts)처럼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적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

실체적 법의 적정절차 조항에서의 무모함(reckless)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무모함은 민사법상의 무모함과 형사법상의 무모함으로 나눌 수 있다. 민사법상으로는 알고 있거나 너무 명백하여 알았어야 할 해악 발생 가능성이 부당하게 높은 위험

30) Rosalie Berger Levinson, Kingsley Breathes New Life into Substantive Due Process as a Check on Abuse of Government Power, Notre Dame Law Review, Vol. 93, pp.357-368(2017).

31)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법의 적정절차 조항은 2개의 독립적인 보호조항들을 갖고 있다. 첫째는, 생명, 자유 및 재산의 박탈은 적정절차(fair process)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실제적인 내용으로서, 절차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합리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정부의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결수가 제기하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구제 소송은 실제적인 법의 적정 절차권리 주장으로서, 개인의 자유 및 생명에 대한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법집행의 어떠한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허용되지 않는 행정부의 권한의 남용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에 직면했을 때 행동을 하거나,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형사법상으로는 해악 발생의 위험이 너무 명백하여 그 위험성을 알았어야 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자가 알고 있는 해악의 위험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2)</sup> 두 개념의 차이는 무모한 행동을 한 행위자가 특정 해악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는가(형사법상의 무모함), 또는 해악의 위험이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가(민사법상의 무모함)로 구분된다.

1994년에 내려진 파머 판결<sup>33)</sup>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도적인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 무모함의 고의와 사실상 동일한 기준) 기준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파머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법적 이슈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 상의 의도적인 무관심 기준이 형사법상의 무모함처럼 위험에 대한 불법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민사법상의 무모함의 객관적인 테스트만으로 민권법 제1983조 소송상의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파머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문구와 목적에 비추어 형사법상의 무모함의 주관적인 인식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인식해야 했지만 인식하지 않아 심각한 위험성을 줄이지 못한 교도관의 행위는 재소자에게 처벌을 가한 것이라고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따라서 해악의 심각한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고 의식적으로 그 위험을 무시하였을 때에만 그 교도관은 무모하게 행동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법원은 결론을 내렸다.

더 나아가 파머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의도적인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은 사실상 무모함(recklessness)과 같은 개념”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파머 판결 이후 모든 연방항소심법원은 파머 판결에서의 무모함의 개념을 미결수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상의 권리주장을 포함한 헌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민권법 제1983조」 소송에 적용해왔다. 킹슬리 판결에서도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맥락에서 미결수를 상대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권리주장의 기준으로 무모함(reckless)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미국 헌법 수정 제8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경우에 미국 법원은 자의적인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 기준을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고 악의적이고 가학적인

32) Heather M. Kinney, The “Deliberate Indifference” Test Defined, 5 TEMP. POL. & CIV. RTS. L. REV. 121(1995).

33) Farmer v. Brennan, 511 U.S. 825, 836(1994). Farmer v. Brennan 사건은 교도관이 기결수가 동료 기결수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피해자인 기결수의 미국 헌법 수정 제8조 상의 잔인하고 예외적인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기결수가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malicious and sadistic) 해악을 가할, 의도적인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는 기준을 채택 해왔다. 위헌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필요한 주관적 요건으로 무모함을 요구한 경우와 무모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의(mens rea)를 요구한 경우의 차이점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2가지 요소를 적시해왔다.<sup>34)</sup> 첫 번째는,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이다. 두 번째는, 경합하는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 하였는가이다. 재소자들의 폭력적인 위협이나 난동과 같은 예측할 수 없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도관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도적인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 기준처럼 숙고할 시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준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를 숙고할 시간이 없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는 교도관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재소자가 헌법위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상을 초래한 교도관의 무모한 행위만으로는 가벌성이 부족하고,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해악을 야기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가 있어야 가벌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한편, 교도관들이 숙고할 시간이 있고, 긴급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모함의 요건은 가벌성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숙고할 시간이 있는 경우로는 재소자에게 부적절한 의료지원,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들로부터의 보호 실패, 재소자의 적절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불법구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교도관들은 자신이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러한 행위가 사고현장의 방관자로 있는 다른 재소자들이나 범죄행위 혐의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가를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요소는 무모함에 근거하여 특정한 위헌행위로 인한 헌법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충돌하는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교도소 내의 폭동이나 소동 사태에서 교도관들은 주 정부의 이해관계인 ‘교도소 내의 규율 확립’을 위하여 재소자들에게 상해의 위험이 있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도관의 물리력 사용행위가 무모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 교도관이 지켜야 할 의무들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면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교도관의 행위의 어려움을 간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전의 연방대법원에서 제시한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킹슬리 판결에서 남겨진 이

34) County of Sacramento v. Lewis, 523 U.S. 833, 850(1998).

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할 수 있다.<sup>35)</sup>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로부터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shock the conscience)라고 보기에 불충분하며 「민권법 제1983조」에 의한 헌법소송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 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 정부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제적인 법의 적정 절차조항을 위반하며,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향후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실제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 위반으로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미결수가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35) Michael S. DiBattista, A Force to Be Reckoned With: Confronting the (Still) Unresolved Questions of Excessive Force Jurisprudence After Kingsley,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Vol. 48, pp.203-256(2017).

## VII. 결론

재소자 간의 폭행 등의 교정사고에 대하여 교정교화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도관들은 이들에 대하여 계호행위를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교정사고의 경우 계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행형법 제14조」에서 계구 사용의 요건은 도주·폭행·소요·자살의 방지 및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 데 이때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교정당국 재량의 남용 여지가 있으며 인권침해 가능성도 매우 크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전교도소의 교정사고도 그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결수에 대하여 계호행위 등을 행한 한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되고 면책되느냐에 대하여 교도관의 자유재량적 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동을 걸고, 교도관의 계호행위 수칙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안하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킹슬리 판결에 따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김한균, 국가마약퇴치전략과 소년형사정책,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임, 천정환, 교정학개론(개정판)(2019). 도서출판 진영사.

#### [국외 문헌]

- Clark, Roger S. (1994). The 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 Formulation of Standards and Efforts at their Implementation 11-12, pp.98.
- DiBattista, Michael S. (2017). A Force to Be Reckoned With: Confronting the (Still) Unresolved Questions of Excessive Force Jurisprudence After Kingsley, *Colimbia Humn Rights Law Review*, Vol. 48, pp.203-256.
- Kinney, Heather M. (1995). The “Deliberate Indifference” Test Defined, 5 *TEMP. POL. & CIV. RTS. L. REV.* pp.121.
- Levinson, Rosalie Berger. (2017). Kingsley Breathes New Life into Substantive Due Process as a Check on Abuse of Government Power, *Notre Dame Law Review*, Vol. 93, pp.357-368.
- Rodriguez, Sara A. (2007). The Impotence of Being Earnest: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ew England Journal on Criminal and Civil Confinement*, Vol. 33, pp.61-79.
- Schlanger, Margo. (2018). The Constitutional Law of Incarceration, Reconfigured, *Cornell Law Review*, Vol. 103, pp.357-389.
- Skoler, Daniel L. (1975). World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reatment of Prisoners, 10 *J. INT'L L. & ECON.* pp.453.
- Struve, Catherine T. (2013). Struve, The Conditions of Pretrial Detention, 161 *U. PA. L. REV.* 1009.
- Office of Pub. Affairs, Justice Department Releases Findings of Unconstitutional Conditions at Miami-Dade Jail Facilities, *JUSTICE NEWS* (Aug. 29, 2011),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releases-findings-unconstituional-conditions-miami-dade-jail-facilities>.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일 시 11.3.(금) 12:00  
참 석 자 교정동우회장, 본부장, 교정동우회 회원 등  
주요 내용 국민의례, 경과보고, 모범지회 표창, 기념사, 축사 등

###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일시·장소 11.28.(화) 14:00, 서울남부(교) 소회의실  
참 석 자 (내부위원) 교정정책단장  
(외부위원) 위원장 임대기 등 8명  
주요 내용 교정시설 음란도서 종합대책의 실효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제41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참석



일시·장소 11.12.(일)~11.16.(목), 베트남 하노이  
참 석 자 본부장 등 8명  
주 제 '교정분야 현안과 새로운 도전' 등 5개 주제

### 신규직원 CRPT 전문화 교육



대 상 자 기동순찰팀 경력특채 신규직원  
주요 내용 수용자 난동·응급사고 대응을 위한 신규직원 보안실무 실시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전광호

##### 송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1월 17일 2023년 하반기 송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구치소 등 17개 기관 송무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과밀수용 관련 행정소송의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 법륜스님 초청 대법회 진행

서울구치소는 11월 3일 법륜스님을 초청하여 즉문즉설 대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교화의 연장선상으로서 수용자의 심성순화 및 인성교육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약 200여 명의 수용자가 참석하였다.

####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 안양교도소 법무운동장 국화 전시

안양교도소는 10월 28일~11월 10일 2주간 법무운동장에서 국화원예작품 40여 점을 전시하여, 지역주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 수원지방법원장 시찰 실시

수원구치소는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장 및 소속 판사들의 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시찰에는 이근배 수원지방법원장을 포함한 15명의 판사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흥연 소장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 증대 및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구치소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시찰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1월 3일 서울동부지검 황병주 검사장 등 검사 9명의 시찰을 진행했다. 시찰단은 중앙통제실, 수용자 입소실, 구인피의자실, 가족접견실, 수용동 등 순으로 둘러 보았다.

####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 국제바로병원 수용자 지정병원 진료 협약 체결

인천구치소는 11월 23일 국제바로병원과 진료협력 및 원격진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구치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 교정시설 참관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11월 8일 성결대학교, 11월 14일 신안산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 2023년 사격 훈련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3일 제2819부대 제1대대 실외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모든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사격 실시 전 사격 방법과 안전수칙, 총기 조작, 미작동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조영

##### 2023년 하반기 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격 유형 검사, 신건강 지킴이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 여주교도소 | 교사 양종문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여주교도소는 11월 2일 지자체·군·경·소방합동으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화재발생 시 대응조치, 환자이송, 도주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 만델라 소년학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만델라 소년학교 수험생 10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수능에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험자 10명과 동부구치소 응시자 2명을 포함 총 12명이 응시했다.

####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 직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춘천교도소는 11월 7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및 소장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과 서약서 작성을 했으며, 사고사례와 근절대책 등을 알아보았다.



####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관 실시

원주교도소는 11월 20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관행사엔 남재성 교수와 학생 등 37명이 방문하여 교정행정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수용동 및 작업장 등 구내시설을 둘러보았다.

#### 강릉교도소 | 교감 전홍재

##### 강릉보건소 초청 '이동 금연클리닉' 실시

강릉교도소는 11월 1일, 2일 양일간 강릉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함께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했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금연 의지는 있으나 시간적·환경적 제약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11월 30일까지 총 5회 진행된다.



####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 전 직원 대상 청렴 및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영월교도소는 11월 1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수원 청렴전문강사가 출강하여 실시했으며, 교육 참석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변화된 청렴(이해충돌방지법 내용 포함) 및 적극행정 관련 법령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 힐링 미술콘서트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11월 13일 전제원 수용자 희망재단의 후원으로 미술사 김청을 초청하여 '수용자와 함께하는 김청 교수의 힐링 미술콘서트'를 개최했다. 수용자 및 직원들에게 비둘기미술, 로프미술, 꽃미술 등 다양한 미술과 치매예방을 위한 빨대미술 등을 선보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 사랑의 자장면 함께 나누기 행사

평택지소는 11월 1일 교정의 날을 맞이해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자장면 함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성호 지소장은 “뜻깊은 행사를 후원해주신 평택·안성교정협의회와 평택SM클럽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망교도소 | 8직급 황재민

주한독상공회외소 독일 민간 보안 업체대표 참관 실시

소망교도소는 11월 8일 국제적 친선 교류를 위하여 주한독상공회외소 민간 보안업체 미하엘토마스 대표의 참관을 진행했다. 김영식 소장은 "이번 친선 교류 방문을 통하여 대한민국 교정행정 및 민영교정시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사 임경태

송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11월 13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과밀수용 소송과 관련된 공동대응 방안 및 소속기관별 주요 소송사건 사례 및 문제점 등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직원 가족 참관 행사 실시

대구교도소는 신축 이전을 앞두고 11월 18일 직원 가족 초청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38명과 가족 107명을 초청하여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호송버스 탑승 체험, 교정장비 체험 등을 통해 교도소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교정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 참여

부산구치소는 11월 3일 한마음 한뜻으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 신동윤 소장은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를 전

하며, 혈액 확보에 도움을 드리고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하였다"라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청송양수발전소 참관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1월 14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정책 추진을 위해 청송양수발전소 참관을 실시했다. 장종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유지한 시설인 만큼 경북북부제1교도소 역시 지역과의 상생과 기관과의 화합으로 지역민의 안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변호인 접견실' 신축 개관 행사

창원교도소는 11월 20일 경남지방변호사회 박운권 회장과 김주복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변호인 접견실'의 헌관 제막식을 진행했다. 신축 변호인 접견실은 4개월 간의 공사를 통해 10개의 호실로 확대 개관됐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운

마약재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부산교도소는 9월 4일부터 11월 24일간 마약재활 통합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약류 수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진규 소장은 "이러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마약류 수용자에게 개별적인 처우 및 교육을 제공하여 재범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선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관 실시

포항교도소는 11월 16일 선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영상 시청, 현황 청취, 구내 참관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참관인들이 교정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영근

㈜영진고속관광 업무협약 체결

진주교도소는 ㈜영진고속관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 이송을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재원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11월 13일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 김영광 소장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공무원으로서 원칙적인 근무자세를 가져야한다"라고 말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박성국

진보교회 참관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11월 16일 진보교회 장로 지정수 등을 포함하여 3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현주 소장은 "재직하셨던 선배님들이 직원들을 격려해주셔서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조남영

소방 및 긴급 대피훈련 실시

안동교도소는 11월 14일 소방 및 긴급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교정시설 자위 소방대의 초동 진화, 풍산 119안전센터와의 합동 진화, 응급환자 긴급후송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1월 15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강성현 소장은 직원들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당당한 교정공무원이 되길 당부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소년수용자 4명,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김천소년교도소 소년수용자 4명이 응시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출소 후 대학진학 등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대학진학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사 최도원

해뜨는마을에서 도서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1월 21일 해뜨는마을 대표 방영광 님으로부터 도서 400권을 기증받았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소장은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수용자 복지에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제7765부대, 울산구치소 시설 참관 실시

울산구치소는 11월 8일 제7765부대 장병 17명이 울산구치소를 방문하여 시설 내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경수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장병들이 우리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성우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관 실시

경주교도소는 11월 24일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을 통해 학생들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정기관의 인식을 제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교정동우회 초청 행사 실시

통영구치소는 11월 9일 통영구치소 교정동우회 회장 장필석 등 6명의 교정 선배님을 초빙하여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정

인식 소장은 “통영구치소 전 직원은 앞사람 선배의 발자취에 부끄러지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수용자 문화 공연 실시

밀양구치소는 11월 6일 밀양구치소 대강당에서 취업수용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문화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무료했던 수용생활에 활기를 주는 시간이 되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공직기강 확립 강화 교육 실시

상주교도소는 주요 비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11월 16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비위인 음주운전, 성희롱, 갑질,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기관장 및 복무담당자가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

주요 비위 근절을 위한 직장 교육 및 퀴즈대회 실시

거창구치소는 11월 16일 기간 감소추세에 있던 음주, 주요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교육 및 퀴즈대회를 실시하였다.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김건하

교정위원 간담회 주제

대전지방교정청은 11월 15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의견 청취와 교정위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교정의원 간담회를 주재했다. 수상자인 이규진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을 대표하여 큰 상을 받아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교정동우회 초청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11월 21일에 교정동우회 초청 행사를 실시했

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소내 참관 및 오찬, 불우수용자돕기 기부금 전달식 등을 실시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청주교도소 방문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이 11월 15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은 법무연수원 교육 개선과 관련된 현장 근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현안 논의 시간을 가졌다.

천안교도소 | 교도 이철희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참관 행사 실시

천안교도소는 11월 15일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참관 행사에는 김안식 백석대학교 교수 등 48명의 학생들이 방문했다. 환영식 및 보안교육을 시작으로 정문, 신축수용동, 심리치료과, 문화센터 등의 구내 참관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차소민

직원 가족 참관 행사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제78주년 교정의날을 기념하여 11월 9일

직원 가족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가정의 단합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고, 또한 변화된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김승만 대전지방교정청장이 11월 15일 공주교도소를 방문했다. 김승만 청장은 직원 및 대체복무 요원 복지시설, 수용동, 작업장 등을 살펴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고위직 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11월 14일 이호숙 양성평등교육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하고 관리자로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가족 접견실 개관식

홍성교도소는 11월 15일 소장님과 각과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접견실 개관식을 진행했다. 가족 접견실 정식 개관을 통한 수용자 교정교화 등 홍성교도소의 교정행정 발전이 기대된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백석대학교 천안개방교도소 참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11월 23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3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보

안교육과 신축수용동, 심리치료과, 문화센터 등의 구내 참관이 진행됐다. 이번 참관은 백석대 경찰학부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하반기 합동소방훈련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1월 21일 2023년 하반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소방훈련은 무각본 훈련으로, 예고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부여한 후 소방서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용배

강경장터 가는 날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1월 14일 지역 내 영세상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강경장터 가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권태국 총무교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정영선

교정정책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11월 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동현 청장은 “교정자문위원의 지혜와 경험을 빌려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정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주교도소 | 교위 박선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광주교도소는 11월 2일 신규 위촉 교정위원에 대해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및 구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최규철 소장은 "신규 위원님들이 많은 열정과 관심으로 수용자 교정 교화에 이바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2023년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 개최

전주교도소는 11월 15일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취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취업지원협의회 활동 실적 보고에 이어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교정동우회 초청 행사 실시

순천교도소는 11월 8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교정동우회 순천지회 회원 17명을 초청했다. 교정 시스템과 첨단 교정장비 시청 및 담소의 시간을 가진 후 참관을 실시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목포지청장 방문

목포지청장이 11월 20일 유관기관 상호 간 업무 공조 강화 및 이해 재고를 위해 목포교도소를 방문했다. 목포지청장은 기관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작업장, 수용동, 심리치료팀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셀프빨래방 개청식

군산교도소는 11월 1일 비상대기숙소 셀프빨래방 개청식을

열었다. 셀프빨래방에는 세탁기 3대와 건조기 3대가 설치됐고 한편에는 휴게공간도 마련되어있어 직원들의 쾌적한 심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보라미 준법교실 시행

제주교도소는 11월 30일 제주제일고등학교 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보라미 준법교실을 시행했다. 학생들은 생소한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보호장비를 실제로 착용해보는 등 열의있는 모습을 보였다.



장흥교도소 | 교사 채종건

체포·진압술 훈련 실시

장흥교도소는 11월 23일 장흥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포·진압술 훈련을 실시했다. 수용자의 도주, 자살, 자해 등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체포, 진압 및 대처방법 훈련을 실시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해남교도소는 11월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업무 능력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교도소 | 교도 윤홍익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직원 교육 실시

정읍교도소는 11월 9~10일 이틀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응급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군산교도소 교감 김형준

김형준 교감은 1998년 임용 후 약 25년 동안 재직했다. 현재 보안과 수용처우 팀장으로, 책임감 있는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한 원칙적 근무를 통해 수용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등 교정사고방지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산교도소 교위 박규태

박규태 교위는 야간 근무 중, 기도폐쇄로 인해 의식을 잃어가는 수용자를 발견하고 평소 교육받았던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생명을 지켜냈다. 야간에 취침하지 않고 있는 수용자들의 취침을 유도하고 간략한 상담을 실시해 수용관리팀에 인계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자 동정관찰로 교정사고 및 수용자의 심신 안정에 기여했다.



의정부교도소 교위 이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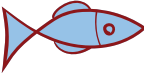



이용석 교위는 2003년 임용 후 약 20년 동안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쓰고, 항상 적극적이고 친절한 응대로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보안과와 의료과에서도 장기 근무하면서 평상시 의료용품의 재고량, 유효기간을 상시 파악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과 동시에 수용 생활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 독자퀴즈

###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8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도넛
-  잠자리
-  나비
-  공
-  물고기
-  피자
-  고래
-  토끼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발송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 사용안내

구분	지원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택)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바우처 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 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천원, 희망제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구매 시 등유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 월간 <교정> 논문 모집

월간 <교정>에 게재할 교정 관련 논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논문 투고 방법

### 논문 주제

•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가능

### 논문 종류

• 학위 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 제출 방법

•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로 원고 송부  
(correct2023@naver.com)

※ 제출 시 이메일에 성명,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월간 <교정>에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